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 일시 : 2013년 6월 11일(화) 16:00~18:30
- 장소 : 더케이호텔 본관1층 자스민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일정

○ 일시 : 2013년 6월 11일(화) 16:00~18:30

○ 장소 : 더케이호텔 본관1층 자스민룸

○ 진행일정

【주 제 발 표】

16:00~16:20 발표 1.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론
김 태 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20~16:40 발표 2. 인권지표의 측정과 실행 - 유엔 인권지표 가이드의 이해
천 정 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40~17:00 발표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김영지·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희 (평택대학교 교수) ·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17:00~17:10 휴 식

【지 정 토 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17:10~17:20 토론 1. 김 신 영 (한국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17:20~17:30 토론 2.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17:30~17:40 토론 3.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교수)

17:40~17:50 토론 4. 임 성 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7:50~18:00 토론 5.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 합 토 론】

18:00~18:30 참석자 전원

C·O·N·T·E·N·T·S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목 차

발표 1.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론 _ 7

☞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인권지표의 측정과 실행 - 유엔 인권지표 가이드의 이해 _ 37

☞ 천 정 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_ 55

☞ 김영지·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희 (평택대학교 교수) ·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지 정 토 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_ 129

- ☞ 토론 1. 김 신 영 (한국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 ☞ 토론 2.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 토론 3.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교수)
- ☞ 토론 4. 임 성 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토론 5.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 록.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_ 153

- ☞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Ⅰ

【발표 1】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론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론

1. 인권개념과 인권지수

가. 정량적 인권분석 개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인권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대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상태를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인권연구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인권과 관련된 횡단면(cross-section)뿐만 아니라 시계열(time series) 분석이 가능한 각종 인권정보가 생산, 보급되는데 기인한다. 즉,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정보 수집 및 기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프리덤하우스는 인권침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의회는 국무성으로 하여금 국제인권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정량적 연구들은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 이후 여러 학자와 연구자에 의해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인권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나 실증적 분석에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전략적 어려움(strategic difficulties), 개념적 어려움(conceptual difficulties), 실증적 어려움(empirical difficulties)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먼저 전략적 어려움은 인권지수 연구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 문제로서, 인권에 대한 실증 분석할 때에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전략적 결정이다. 인권침해를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 집중적으로 혹은 포괄적으로 연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권침해를 독립적 변수로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정치적 항거를 설명하거나 혹은 미국의 해외원조지원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권을 사용하였다. 인권침해를 독립적 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단일한 지표변수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경우 복잡한 지표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인권침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연구들은 주로 경제 제도, 사회경제적 요인, 군사정부 그리고 속국(dependency)의 결과로 인권침해를 분석했다. 이와 같이 인권침해를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극히 단순화된 척도로 인권침해를 다루거나 혹은 침해의 한 측면만 보는 경향이 있다.

인권침해를 집중적으로 혹은 포괄적으로 연구할 것이냐의 문제는 인권침해를 측정하는 노력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방대한 사례연구(case study)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인권침해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검증할 수 없고, 횡단면적 자료를 추구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인권침해에 대한 횡단면적인 연구와 같이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순환적인 특징을 파악하려면 횡단면적인 시계열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횡단면적 시계열 풀링(pooling)자료는 자료 입수가 상당히 힘들고, 보다 일관성 있는 측정을 요구한다. 물론 자료수집 문제를 다소 감소시키고 비교가능하며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려면, 분석대상을 특정 대륙의 국가 혹은 지역의 하위 수준으로 하면 된다.

- ② 두 번째로, 개념적 어려움은 인권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나 실증적 분석을 할 때에 필요한 인권 관련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인권을 지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념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권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규범적이고 실증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인권침해의 구성요소를 결정할 때에는 규범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실증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인권 존중의 의미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인권 존중은 민주주의 정의(definition)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민주주의와 같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도 종종 인권존중에 실패한다. 또한 민주주의 정의에 인권존중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에서도 인권존중에 대한 하위 척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인권지수의 지표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권 내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인권은 법제의 승인과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도덕적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을 법적 권리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과 협약, 국제관습법, 국내법 등과 같은 실정법 형태를 가짐에 따라 이들 법을 통해서 인권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내용을 특정한 국가의 실정법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정법에 있는 권리 이외에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인권내용을 유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권지표를 구축할 때 인권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외에 인권의 수량적 분석을 할 때 직면하는 또 다른 개념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와 집단의 권리(group rights)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인권을 정의할 때에 집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배제시켜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와 같은 결정은 인권지수를 하나의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개발할 때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척도들을 표준화시켜서 복합지수를 구축,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집단의 권리는 소수자의 유형별로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는 소수자 권리와 유사하나, 권리를 구성원이 아니라 집단에 귀속시킨다는 점은 일반적인 소수자 권리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니켈(J. W. Nickel)은 집단의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 국가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의미의 인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은 집단의 권리가 인권조약이나 기타 국제법의 다른 영역에 적절하게 포함되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 ③ 세 번째로 실증적 어려움은 정보제공자와 보고하는 집단의 편견,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부족, 침해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서 신뢰할만한 척도개발을 어렵게 하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어려움은 인권지수 개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 개발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다만 다른 지수개발보다 인권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통상 정보제공자와 수집가가 정쟁(political dispute) 중에 있는 특정한 집단과 연대하는 경우, 폐쇄 사회로 인해서 정보수집이 어려워져 신뢰할 수 있는 인권정보 수집이 힘들 경우 그리고 인권침해의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와 보고자의 편견이 정보수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나 실증적 분석을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세 가지 유형 즉, 전략적 어려움, 개념적 어려움, 실증적 어려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략적 어려움은 정량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기는 하나, 인권지수 개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증적 어려움은 지수 개발한 이후 인권수준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인권지수 개발의 방향과 방법론에 영향을 주는 개념적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 인권의 개념

인권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권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실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따라 인권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인권의 특성, 내용, 범주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맥니트(A. D. McNitt)가 언급한 인권의 수량적 분석을 할 때 직면하는 대표적인 개념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인권의 보편성, 인권 범주와 내용 그리고 집단적 권리를 차례로 정리하였다.

1)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하면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性) 언어, 종교, 재산, 신분, 출생지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dignity and worth)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편성(universal), 비양도성(inalienable),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상호의존성(indivisible, interrelated and interdependent)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했다.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양도성은 누구도 특별한 상황 예컨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유권의 제한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인권을 박탈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서로 불가분적, 상호 연관적 그리고 상호의존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여기서 인권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데, 먼저 모든 인권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된 인권들이 공통된 규범적 기초 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인권들의 필수요건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특정한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또한 불가분성은 각각의 인권 내용은 다른 인권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지원하며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인권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의 특성 중에서 지수개발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인권의 특성으로 먼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과 관련해서는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논쟁이 있다. 급진적 보편주의는 인권을 포함한 모든 가치는 변할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한 가지 형태의 인권만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집단은 인권의 보편성이 개별 인간의 특성을 무시하는, 서구 국가들이 만든 문화제국주의 이념을 나타낸다고

한다. 상대주의에 의하면 도덕적 가치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고 했다. 예컨대, 도넬리에 의하면 인권은 국가별, 지역적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과 그 이외 다른 형태의 다양성과 상대성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도 인권은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인권의 실현 조건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과 그 제도화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일정 부분 보편적 인권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도덕적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과 보편적 원칙을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적합하게 해석,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지수 개발에서도 보편적 가치로서 합의해야 할 차원의 인권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권을 적절히 구분하여, 지표 선택과 지표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축된 지표도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권 범주와 내용

인권은 실증법과 관계없이 도덕적 근거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만으로 인권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증법에 기초한 구체적인 권리이어야 한다. 오늘날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 각국의 국내법 등으로 인해서 실증법의 형태를 가졌다.

- ① 세계인권선언은 유엔헌장의 인권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1948년 채택되었는데, 전문과 개별 권리를 규정한 본문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66년에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기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이하 사회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이하 자유권)을 채택하였다. 자유권은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며 이 권리들은 그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국가의 소극적인 불개입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해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이 권리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②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근거로 하여 여러 학자들이 인권의 개별 권리목록을 제시하였다. 먼저 니켈(J. W. Nickel)은 세계인권선언에 크게 6개 인권범주 즉, 안전권, 적정절차의 권리, 기본적인 자유권, 정치적 참여권,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40개 구체적인 세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 ③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2004)도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권리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였는데,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신체보전권, 법집행에 대한 권리, 시민적 자유권, 정치적 권리 그리고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최소 필요충족권,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로 구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담론과 법률 및 제도들이 권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환경권, 정보권과 의사소통권, 여성·아동·학생·환자·장애우·토착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신장을 위한 다양한 담론과 제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 ④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5)의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핸드북』에서는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유권은 10개 세부권리 즉, 생명권, 신체 보전 및 존엄성, 신체 자유, 법 행정(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가족생활 보호권리,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회권은 4개 즉,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로 구분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8)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구조화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지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개념적, 방법론적 기본구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12개 권리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핵심 인권규약, 그리고 인권규약 일반논평을 근거로 하여 선택했는데, 12개 권리는 생명권, 자유와 안전권, 식량권,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공무에 참여할 권리, 교육권, 적절한 주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의사표현의 자유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이다.

- ⑤ 또한 니켈(J. W. Nickel)은 국제인권법 즉, 유럽인권협약, 아프리카헌장, 미주인권협약, 사회권규약, 시민·정치권규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등을 검토하여, 인권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다. 니켈은 이와 같이 인권을 구분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권으로 구분하던 방식에 비해서 보다 정밀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류는 바섹(K. Vasek)의 1세대 권리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 2세대 권리인 사회권, 3세대 권리인 집단의 권리 및 평화와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연대권보다 더 식별력이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에서는 자유권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8개 권리 즉, 생명권, 인격적 존제로 대우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정치활동할 권리, 그리고 권리를 구체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권규약과 관련해서도 9개 권리 즉, 노동권,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조약들은 인권목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목록은 보다 명확한 의미를 인권에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인권기구와 연구자가 제시하는 인권목록을 보면 세부 권리 내용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인권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권리를 지표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목록이 너무 길지 않은지 혹은 보편성이 충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담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권의 지표구축단계와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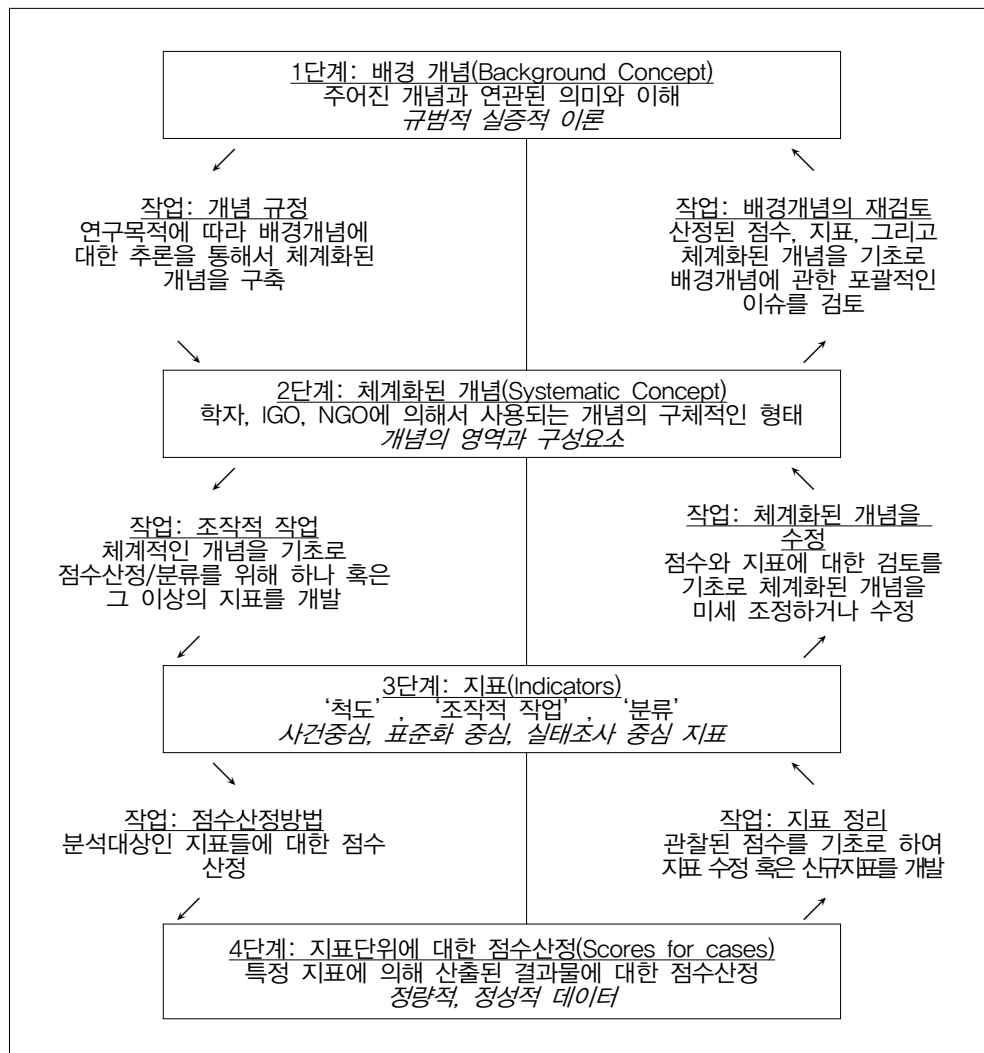
가. 지표화 단계와 작업내용

인권침해를 밝히고 규약의무 준수를 평가하며 그리고 기간에 따른 인권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권의 정량적 측정에 대한 논의는 특히 새로운 방법론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경제·사회·문화권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정량적 데이터는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인권옹호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정량적 데이터 중에서도 인권지표는 특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리에 대한 지표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복잡한 자료를 단순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에 대한 준수, 권리 이행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지표를 개발한 연구를 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인권의 준수와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그 다음은 인간개발의 개선정도를 인권 수준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전프로

그램이 특별한 권리에 미친 영향과 그 성공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인권의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측정의 타당성(validity)이 중요하다. 타당성은 측정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속성 등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측정의 타당성은 인권 개념(concepts)과 관찰(observations)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어드코크와 콜리어(R. Adcock and D. Collier)는 [그림 1]에서와 같은 4가지 단계로 체계화된 개념과 관찰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과 관찰 간의 관계는 인권지표 개발에서 잘 정의된 인권개념들을 유의미한 정량적 척도 혹은 정성적인 범주로 전환시키는 과정과 같다.



자료 : R. Adcock and D. Collier(2001), Figure 1, p.531.

[그림 1] 개념 규정과 측정: 단계와 작업내용

[그림 1]에서 ① 첫 단계는 개념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와 이해를 나타내는 인권에 대한 배경 개념에 대한 것이다. 즉, 개념을 지표로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개념을 분석한다. ② 두 번째 단계는 측정하려는 권리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된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등과 같은 특정한 권리 혹은 시민권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와 같이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이러한 개념을 체계화된 개념으로 구축해야 한다. 체계화된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 연구자, IGO, NGO 등이 사용하는 개념의 구체적인 형태를 말한다. ③ 세 번째 단계는 체계화된 개념을 사건중심, 기준(standard)중심과 같이 의미 있고, 타당하며 그리고 신뢰성 있는 지표 혹은 그 이외 다른 척도로 전환시키는 조작적인 단계이다. ④ 네 번째는 개인, 집단, 국가, 지역 등과 같은 분석단위별 지표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작업(tasks)은 각 단계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과정을 나타낸다. 왼쪽 첫 번째의 개념 규정은 배경개념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조작화 작업(Operationalization)은 체계화된 개념을 지표로 전환, 점수산정은 지표에 점수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오른쪽 마지막 작업부터 올라오면서 먼저 지표는 산정된 지표 값을 기초로 다시 정리하고, 체계화된 개념은 지표 값의 점수와 지표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이후에 미세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든 단계를 재검토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의 측정과정은 2~4단계이다.

나.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

특정 국가의 실질적 권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책무와 관계없이 집단이나 개인이 실제로 향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와 실제 향유하는 권리는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 개인과 집단은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다 높아진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인권침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및 국제 비영리 인권기관의 증가로 이어졌다. 비영리기관은 인권과 관련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인권을 침해받은 집단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실제 인권상황, 개인의 인권상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두루뭉술하고 부정확했다.

실제 인권상황을 측정하는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세 가지 유형 즉, 사건에 기초한 자료(event-based data), 기준에 기초한 자료(standard-based data) 그리고 조사에 기초한 자료(survey-based data)이다.

- ① 사건에 기초한 자료는 언제, 무엇이 발생했으며 누가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이고 수량적인 개요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실제 건수에 비해서 과소 추정되거나, 기간별 혹은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건중심자료는 시민·정치권을 모니터링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자료가 경제·사회·문화권 수준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사건에 기초한 대표적인 데이터는 고문과 불법처형 등의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는 URIDOCs 자료인데, 동 자료는 개별 국가의 인권위원회들이 수집한 인권침해의 시계열인 지표를 제공하는 사건중심 자료이다.

- ② 기준에 기초한 자료(Standards-based data)는 침해의 발생빈도와 정도를 담고 있어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한 권리를 비교 가능한 수량적 척도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다. 척도로 되어 있는 동 자료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 관련 지표로는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 정치적 자유지수(index of political freedom), 고문척도(the torture scale) 등이 있다. 그리고 해서웨이(O. O. Hathaway)는 미국 국무성의 정보를 이용하여 1~5점 척도로 고문을 측정하였다.
- ③ 실태조사에 기초한 자료(survey-based data)는 특정 국가의 표본대상 집단으로 인권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개인수준의 인권인식 혹은 권리침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로는 유럽연합의 유로바로메타(Eurobarometer), 세계 삶과 가치 조사(World Values Survey)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조사 등이 있다. 실태조사에 기초한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로는 국가에 의해 수집, 확산된 정량적인 정보인 사회경제적 통계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가의 협조와 국제기구 지도 아래에서 수집되는 행정기록과 통계조사자료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통계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권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건수, 수형자 수 등 법무행정 이슈 등과 같이 시민정치권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자료 개발과 폭넓은 활용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여전히 다수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즉, 사건중심데이터는 발생한 사건을 과소 혹은 과대기록하거나, 발생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인권침해 사건을 기록할 수 없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분쟁에 시달리는 사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은 선택편기와 대표성(selection bias and misrepresenting data)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기준중심 데이터는 국가들 간의 인권보호 차이를 절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제한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인권 보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측정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중심데이터는 인권 관련 표준화된 질문문항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에 따라 나타나는, 데이터의 문화적 편차(bias)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지표(Indicator)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지표란 인권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수(Index)는 수량의 대비에서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의 100분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즉, $\text{지수} = (\text{비교량}) \div (\text{기준량}) \times 100$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한 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계열을 취급할 때는 개별지수라 하고, 서로 관련된 많은 계열을 취급할 때를 복합지수(composite indices)라고 한다. 이러한 복합지수는 여러 가지 지표 혹은 하위지수로서 산정한다. 즉, 정교한 지수는 하위지수(sub-indices)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지수점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은 지수로 대표적인 것이 환경지속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국가 성평등지수 등이 있다. 단순한 지수로는 하위지표(subset of indicators)로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지수가 유엔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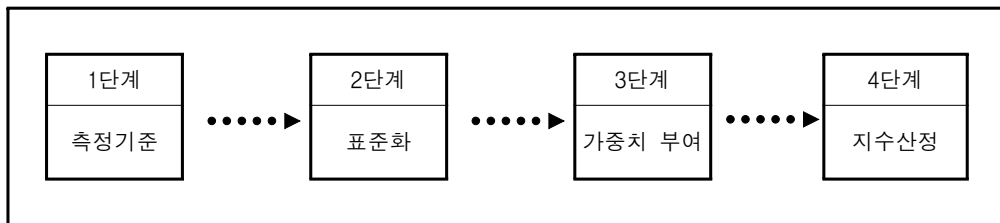
지금까지 개발된 인권지수를 보면 휴매너(Humana) 인권지수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복합지수이고, 경제사회권이행지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회권 복합지수,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 유엔개발기구의 정치적 자유지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자유권 복합지수이다. 이 외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인권지수는 하위지표로 구성된 인권지수에 속한다.

나. 지수개발 과정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역(dimension)을 선택해야 한다. 영역 선택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각 영역의 분산(variance)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이다. 두 번째는 영역들 간의 경험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각 영역들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영역 간에 상관관계가 크면 영역을 통합하거나 해당 영역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

여러 지표 값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지수산정과 여러 지표를 지수화하는 일련의 단계로 볼 수 있다.

- ① 먼저 인권지수 개발의 시작은 인권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 즉, 인권지표의 측정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인권지표의 경우 인권수준을 인권침해로 측정할 것인지 혹은 인권향유로 측정할 것인지, 투입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혹은 산출지표로 평가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앞의 인권지수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소극적인 권리인 자유권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권침해 정도 중심으로 측정하고 적극적인 권리인 사회권 연구는 인권향유 정도 중심으로 인권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에 따라 이와 같은 측정기준으로 인권을 일률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권리마다 측정기준이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자료: 김태홍 외(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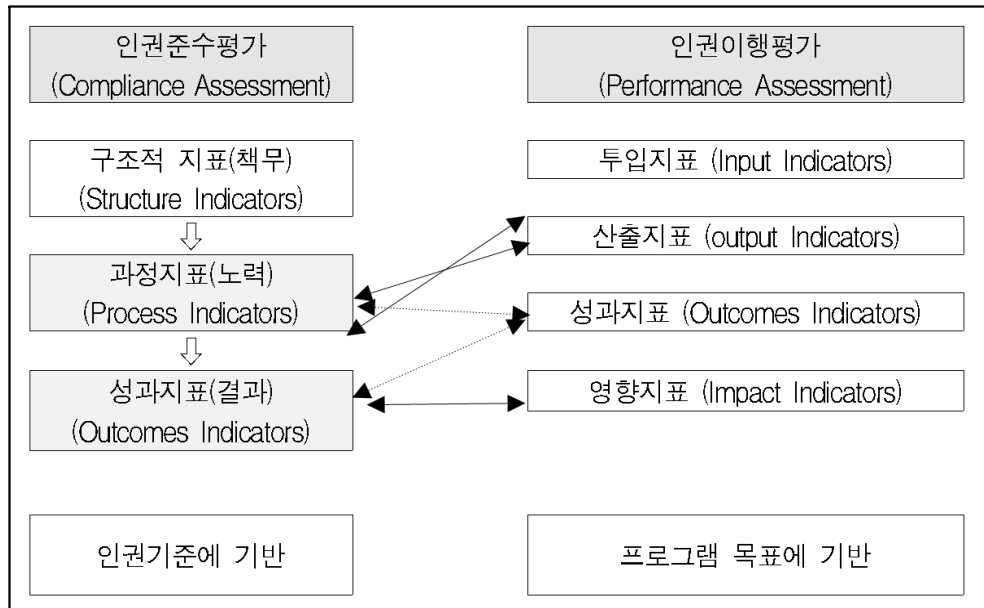
[그림 2] 지수의 개발단계

또한 인권을 측정하는 지표가 어떠한 지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권을 지표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원칙상 권리, 실제상 권리 그리고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고, 인권기준에 대한 책무, 책무의 이행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개념화한 구조, 과정 그리고 성과지표가 있다. 실제 자유권 지수, 사회권지수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지수들은 투입지표(input or means indicators)와 산출지표(outcomes indicators)를 복합해서 사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지표개념에서 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대체로 과정지표는 투입지표, 그리고 성과지표는 산출지표를 나타낸다. 그러나 과정지표는 투입지표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지표의 성격도 띈다.

그리고 자유권 지수들은 주로 투입지표, 사회권지수는 산출지표를 주로 사용하여 인권수준을 산정하고 있으나 개별 권리의 특성 혹은 자료 입수한계 등으로 인해서 자유권 지수 혹은 사회권 지수중에서도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혼재해서 권리의 이행 혹은 향유 수준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국가인권지수 개발이기 때문에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료입수한계 등으로 인해서 필요하면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 지표를 각각 구축할 때에도 과정지표

와 성과지표를 혼합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2012), Fig. XII.

[그림 3] 유엔의 지표 틀: 준수와 이행평가

② 표준화는 여러 개의 지표를 가지고 하나의 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표준화는 각 지표 값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지표들 간 비교 가능한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 과정은 각 지표의 단위를 제거함으로써, 지표들 간 사칙연산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표준화 과정은 지표를 동일한 척도로 만들어 주는 필수 절차 중 하나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 표준화 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방법 즉, 표준 점수(Z score) 방식이다. 표준점수는 $Z = (x - \mu) / \sigma$ 으로 x 는 정상화되는 원수치, σ 는 표준편차, μ 는 모집단 평균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최저 최대(Min-max)방식 즉,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참고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방식, 평균을 기준으로 이상, 이하를 지표화하는 방식, 서열화 $I = \text{Rank}(x)$, 평균이하와 이상 지표화(Indicators above or below the mean) 방식, 연속된 기간 동안 차이의 백분비 방식 $I = (x_t - x_{t-1}) / x_t$ 등이 있다. 인권지수에서는 경제사회권이행(SERF)지수의 경우 최저 최대방식으로 지표를 표준화하였다. 평균을 기준으로 이상,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는 인권지표도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지수개발에서 지표의 표준화는 개별 권리들에 대한 지표의 성격을 감안한 이후에 적절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주요 지표의 표준화 방법

방식	등식(Equation)
표준점수	$Z = (x - \mu) / \sigma$
최저, 최대 방식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참고점 거리방식	$Y = (x_{ref} - x) / x$
서열화 방식	$I = \text{Rank}(x)$
차이백분비방식	$I = (x_t - x_{t-1}) / x_t$
범주화방식	$I = 0$, 만일 $x_t < p^{10}$, $I = 1$, 만일 $p^{10} \leq x_t < p^{20}$ $I = 10$, 만일 $p^{90} \leq x_t$

③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가중치 부여는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다. 지표의 가중치 부여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많고 가중치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지수 개발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Equal Weighting)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모든 지표 혹은 영역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통상 통계적 혹은 실증적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지표의 경우 굽타(Dipak K. Gupta 외)가 휴매너 인권지수가 가진 동일 가중치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굽타는 휴매너 지표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별분석으로 재계산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외에도 표준편차의 변화 등을 이용한 수리적 접근 방법도 있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Budget Allocation Process),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과 같은 통계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인권지표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부분이 동일 가중치부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권지수 개발과 같이 특정 국가의 인권지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제비교 혹은 지역별 비교 등과 같이 지표별로 여러 국가 혹은 지역의 정보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요인분석, 판별분석 등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구축할 수가

없다. 또한 권리별 국가이행 수준이 다름에 따라 동일 가중치 부여는 우리나라 인권 현황을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가중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계층적 분석법은 1970년대 초 사티(Saaty)에 의해 개발된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 목표나 평가기준이 다수일 때 개별항목의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4. 인권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가. 인권지수의 영역

인권지수를 복합지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위영역(dimension)과 해당 영역에 속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해야 한다.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은 인권의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표 2>에 나타난 기존 인권지표관련 연구의 인권 내용과 이미 개발된 인권지수 영역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1세대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세대 권리), 연대권(3세대 권리)을 포괄하는 인권지수 혹은 지표를 보면, ① 바섹(D. K. Vasek)은 인권 내용을 ‘1세대 권리, 2세대 권리, 3세대 권리’, 도넬리(J. Donnelly)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구정우의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인권’, 덴마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성평등권리’로 구분하였다.

② 자유권과 시민권, 연대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좀 더 세분된 권리유형별로 구분한 방식으로 랜드만(T. Landmann)의 ‘시민권, 참정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연대권’, 니켈(J. Nickel)의 ‘안전권, 적절한 절차의 권리, 자유권, 참정권, 시민권, 사회권, 특정한 집단에 대한 권리’, 도넬리와 하워드(J. Donnelly & R. Howard)의 ‘생존권, 귀속권, 권리보호권, 권한권’, 바르쉬(R. L. Barsh)와 유엔개발기구의 인간자유지수의 ‘개인의 안전,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 기회의 평등, 시민권, 사회권, 특정한 집단의 권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의 ‘신체보전권, 법 집행에 관한 권리, 시민적 자유권, 정치적 권리, 최소 필요충족권,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만을 측정하는 인권지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인권 내용 혹은 지표영역을 보면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정 지표의 경우

휴매너(C. Humana)의 ‘권리관련 지표, 자유관련 지표’, 굽타(D. K. Gupta)의 ‘생명권, 참정권, 시민권’,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의 ‘시민자유권, 참정권’ 등이 있다. 그리고 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측정 지표로는 경제사회이행지수의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권, 양질의 노동권’, 문진영의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인권측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설정한 영역 및 인권내용 구분은 측정하고자 하는 인권유형과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권을 구분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가능하면 연대권을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단위(units)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단위가 해당 권리 특성과 가용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2 주요 인권지수 지표체계의 영역

	인권지수	
J. Donnelly*	시민·정치적 권리	비차별, 삶과 신체에 대한 권리,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사생활 자유, 거주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 자유, 집회 결사 자유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 기본적 생활권, 교육권, 건강권, 휴식과 레저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J. W. Nickell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권, 적절한 절차의 권리, 자유권, 참정권, 시민권
	사회권	사회권
	특정한 집단의 권리	특정한 집단의 권리
C. Humana와 UNDP HFI	권리지표	...에 대한 권리, ...에 대한 법적 권리, ...에 대한 개인적 권리
	자유지표	...으로부터 자유, ...을 위한 자유
D. K. Vasek*	1세대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 참정권
	2세대 권리	사회권, 평등권
	3세대 권리	연대권
T. Landmann*	시민 정치권	시민권, 참정권
	권리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연대권	연대권

인권지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신체 자유, 권익피해 구제 권리, 거주·이전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건강, 보건 및 환경권, 문화, 예술 권리, 가족생활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인권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북한이탈주민,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구정우	자유권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정력 정의, 수감자 권리, 여성 아동권리, 소수자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복지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노동권, 교육권
시민·정치적 권리 지수		
Barsh와 UNDP의 PFI		개인의 안전,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 기회평등
프리덤하우스 지수		시민자유권, 참정권
J. Donnelly & R. Howard*		생존권, 귀속권, 권리보호권, 권한(역능)권
D. K. Gupta		생명권, 참정권, 시민권
CIRI 인권지표		신체적 존엄권, 권한관련 권리, 여성 경제, 사회권, 사법부 독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지수		
SERF Index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권, 양질의 노동권
문진영		소득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주: *는 지표체계의 영역이 아니라 인권내용을 구분한 것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의 영역을 <표 2>와 같이 구축하였다. 즉, 먼저 국가인권지수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지수의 영역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는 권리 내용을 기준으로 ‘안전권’, ‘적정절차의 권리’,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영역구분은 본 연구의 1장에 있는 국내외 인권지표에 있는 니켈(Nickell), 유엔개발기구(UNDP)의 정치적 자유지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의 인권유형 구분 등과 비슷하다. 그리고 각 영역의 지표구성을 <표 3>과 같이 하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영역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는 권리 내용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영역구분은 경제사회권이행지수의 영역, 문진영 사회권 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의 인권유형 구분 등과 유사하다. 그리고 각 영역의 지표구성은 <표 3>과 같이 구축하였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음에 따라 본 연구에는 인권지수 지표체계에 소수자 인권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인권을 하나의 영역으로 별도로 구축하여, 자유권 및 사회권과 함께 복합지수인 인권지수(composite human rights index)로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권리 및 취약계층 인권이 모든 인권규범 혹은 원칙에 걸쳐져 있음에 따라 인권지표체계에 별도로 구축하였다.

표 3 **본 연구의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안)**

	영역	영역에 속하는 권리 ¹⁾	권리관련 국제협약 및 규약 ²⁾
시민 정치적 권리	안전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UDHR 1~6조, 9조/ CCPR 6조, 7조
	적정절차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UDHR 6~11조 / CCPR 14~16조, 7조
	자유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받을 권리	UDHR 12조, 16조, CCPR 17~23조
		이동의 자유	UDHR 13조, CCPR 12~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UDHR 18조, CCPR 18조
		의견 및 표현의 자유	UDHR 19조, CCPR 19조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UDHR 20조, CCPR 21조, 22조(1), (2)항
	참정권	참정권	UDHR 21조, CCPR 25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평등권	*소수집단권리 등	
	사회보장권	사회보장, 적정한 생활할 권리	UDHR 22조, 25조, CESC 9조, 11조
	노동권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UDHR 23조(1), CESC 6조
	건강권	건강권	UDHR 25조, CESC 12조
	주거권	주거권	UDHR 25조, CESC 11조
소수자 권리	교육권	교육권	UDHR 26조(1), CESC 13조, 14조
		여성, 아동,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CEDAW, CRC, CRPD, CMW,

주: 1) ‘영역에 속하는 권리’는 하위영역 혹은 지표화하는 권리가 아니고, 참고용으로 영역에 속하는 권리를 나타냄.

2) UDHR: 세계인권선언, 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CESC: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CRC: 아동권리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CMW: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 권리 보호협약임.

나. 인권지수의 지표

인권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지표 개발인데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적 방법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 틀을 이용하여 인권규약의 관련 조문과 인권위원회 일반논평에 나열된 권리의 규범적인 내용을 담은 지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지표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분석틀로는 랜드만(2005)과 국제인권관련기구(2008)의 연구가 있다. 랜드만은 인권을 원칙상 권리, 실제상 권리 그리고 정책성과를 개념화하여 지표를 발굴, 구축하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에 비해 국제인권관련기구(2008)는 인권기준에 대한 책무, 책무이행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개념화하여 구조, 과정, 성과지표로 구축하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아래에서는 인권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이러한 분석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랜드만은 인권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인권측정과 관련된 몇 가지 가정(assumptions)을 하였다. 즉, 인권 존재에 대한 철학적 기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약은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인권침해는 국가 혹은 비정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은 개인, 집단은 관련 정보나 증언을 제공하고 인권전문가는 그런 기록을 정형화된 구조로 제공하며 그리고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정도를 수집한다고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호되지 않으며, 보호정도는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와 같은 가정은 랜드만 연구 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을 지표로 전환시켜서 인권을 측정하는 모든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랜드만은 국제 및 국내 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규범적인 기준인 원칙(principle), 정부의 공식적인 책무와 관계없이 개인 혹은 집단이 실제 향유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인 실제(practice) 그리고 인권에 영향을 주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정부정책의 정량적인 성과(policy outcomes)에 의해서 인권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표 4> 참조).

- ① 이에 따라 국제인권규약과 국내법에 있는 원칙에 의한 권리(rights in principle)를 나타내는 지표의 경우, 국가의 해당 권리에 대한 법규 구비 여부 등을 반영한다. 원칙적 권리의 측정이란 정성적인 법률 정도를 정량적 정보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동 작업으로 법규가 정량화되면 법률과 실제제도의 비교가 가능하여 인권보호 현황을 파악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
- ② 실제적 권리(rights in practice)는 이미 언급했듯이 정부의 공식적인 책무와 관계없이 집단이나 개인이 실제로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실제 향유하는 권리는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 개인과 집단은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적 권리를 측정하는 지표 발굴 및 구축을 위해서는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의 입수가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자료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조사 자료의 경우 권리보호에 대한 표준화 된 질문문항에 대한 의미가 문화적, 정치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서 국가마다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동 조사 자료를 이용한 인권의 국제비교 결과는 편의(bias)를 가져온다. 따라서 실제적 인권측정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 인권측정의 분석틀: 원칙, 실제 그리고 정책

	원칙 (Principle)	실제 (Practice)	정책성과 (Policy Outcomes)
정의 (Definition)	- 국제 및 국내 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규범적인 기준	- 개인이나 집단이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	- 인권에 영향을 주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정부정책의 정량적인 성과
일반 지표 (General Indicators)			
일반 지표	- 국내 헌법에 있는 권리 보호에 대한 법규 - 지역 및 국제적 인권기관의 법규에 의한 국가 참여	- 사건에 기초한 침해 기록 - 인권 기준에 기초한 개별 국가의 제도 평가 - 조사에 기초한 인식에 대한 자료	- 총합(거시)통계 - 특정 영역의 법률
특정 지표 (Specific Indicators)			
시민 (Civil)	- 고문, 임의구금, 공정한 재판, 개인적 서신 등	- 고문, 임의구금 등과 같은 권리를 침해 정도	- 사법부의 재정규모 - 경찰서, 교도소 개혁을 위한 투자
정치 (Political)	- 회합, 집회, 투표권	- 개인의 회합, 집회,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	- 등록 유권자 수, 투표자 수 - 시민단체 수
경제 (Economic)	- 근로권, 노동조합결성권, 단체교섭권	- 근로, 노동조합결성, 단체교섭 활동이 발현되는 정도	- 노동조합원 수 - 평균임금 - 소득불균형
사회 (Social)	- 보건 및 교육권	- 개인과 집단의 보건 및 교육 제도에 대한 접근 방해 정도	- 사회복지, 교육, 보건 제도 - 병원침상, 문해율, 출산 및 사망률
문화 (Culture)	- 언어, 종교 그리고 소수민족 권리	- 언어, 종교 및 인종 차별의 정도 현황	- 소수집단의 사회 및 공간적 이동 -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지출

자료: Todd Landman(2004), p.927.

③ 원칙상의 권리, 실제상의 권리와 함께 정부정책의 성과(policy outcomes)에 대한 집합적인 통계(aggregated statistics)를 사용하여 인권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발경제학에서는 정부정책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 즉, 국민총생산액, 1인당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보건, 교육 그리고 복지지출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비록 인권보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척도는 인권에 영향을 주는 정부지원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개발지표(development indicators)도 경제, 사회, 문화권의 점진적 실현을 측정하는 대리척도로 많이 활용해왔다. 이와 같이 개발지표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및 사회권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총합통계(aggregated statistics)는 시민정치권을 측정하는데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고 문화적 권리 측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2)는 국제인권관련기구(2008)가 인권측정을 위한 지표 도출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한 조작적 분석틀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 인권을 지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의 법적 기준에 대한 기술(記述)을 간략하고 명확한 특성(attributes)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 특성을 개념 규정하는 작업은 권리 내용을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권리의 규범적 기준과 지표를 명시적으로 연계시켜준다. 그 결과 권리 특성의 선택은 적절한 지표 혹은 지표군(cluster)의 발굴을 용이하게 한다. 실제 국제인권기구가 지표를 발굴한 권리의 경우 4~5개 특성으로 해당 권리의 핵심적인 규범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지표는 특정 인권기준에 대한 의무주체의 책무(commitment),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취하는 노력(efforts)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results)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는 국가의 책무, 노력,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과정-성과(structure-process-outcome) 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하면 구조-과정-성과지표는 각 인권에 대한 세 가지 의무 즉, 존중, 보호, 이행 의무에 대한 지표를 발굴하는 것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먼저 구조-과정-성과지표는 개발정책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정책입안자와 담당자, 개발 및 인권 전문가에게 익숙한 지표체계이다. 이에 따라 인권 촉진 및 이행에 동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인권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고, 인권기준과 원칙을 정책수립과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존중, 보호, 이행 의무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발굴하는 경우 존중, 보호 및 이행 의무 중에서 단지 하나의 의무만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를 발굴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 통상 입수 가능한 행정 및 통계자료에 기초한 지표는 하나 이상의 의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권 각각의 특성에 대한 지표를 선택할 때에는 인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이행에 대한 국가의무를 명시적이고 유일하게 반영하는 모든 지표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지표구축은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권기준에 대한 기술(記述)을 체계화된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도출한 구조, 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지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무, 노력,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권이행 정도를 측정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런 지표들은 지표선택을 단순화시키고 문맥상으로 적절한 정보를 사용토록 하며, 인권 실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지표수를 최소화시킨다.

구조적, 과정적 그리고 성과지표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① 먼저 구조적 지표(structural indicators)는 인권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국제인권규약 비준 및 채택, 기본적인 제도의 존재 등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지표는 해당 인권 실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의지를 파악한다. 이에 따라 구조적 지표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기준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제도 유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상 특정 국가의 인권의무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권이행에 필요한 실현가능한 실천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권리와 그 권리의 특성에 대한 구조적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에 대한 정책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이 예시한 인권 중에서 양질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구조지표는 ‘노동권 관련된 국제인권과 국제노동기구의 규약 및 협약’, ‘헌법 혹은 다른 상위법에서 노동권 시행 시점과 적용범위’, ‘기회평등보장과 제반 고용차별 철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노동권 실행을 위한 국내법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이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하여 ‘완전 및 생산적 고용을 위한 국가정책의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법정 주당 최대노동시간’ 등이다. 자유권인 실종의 구조지표는 ‘생명권 관련 국제인권규약 비준’, ‘헌법에 생명권 관련 규정 시행 시점과 적용범위’, ‘생명권 실행을 위한 국내법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이다.

- ②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는 정부의 정책수단과 관련이 있다. 정책수단이란 인권 실현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가 채택하는 공공프로그램이나 정부 개입 등을 포함한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cause and effect relationship)를 기초로 과정지표를 구축하면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권리에 대한 과정지표를 선택할 때는 해당 권리에 대한 구조지표 혹은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는지, 의무주체의 실행 노력을 명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지표를 이용하면 권리의 점진적 실현 정도 혹은 정부의 권리보호 노력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다.

유엔이 예시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과정지표는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목표집단 비율’, ‘학력별 연간 고용증가’,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의 무급가족돌봄과 무급가족노동에 투입하는 평균시간’ 등이다. 자유권인 실종의 과정지표는 ‘보고된 기간 중에 재판전 법정 최대 구금 시간을 초과한 사건비율’, ‘보고기간 중 법정에서 기소된 인신보호영장과 유사한 청원 숫자’ 등이다.

- ③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는 인권실현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즉, 성과지표는 인권의 이행정도 뿐만 아니라 권리의 향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성과지표는 변화가 느린 지표이며 과정지표보다 순간적인 변화에 덜 민감하다. 이에 따라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각각 유량변수(flow variable)와 저장변수(stock variable)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 특정한 권리에 대한 과정지표는 다른 권리의 성과지표가 될 수도 있다.

유엔이 예시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성과지표는 ‘고용률, 성별, 목표집단 그리고 학력별 고용률’,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 ‘비농림부문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이다. 자유권인 실종의 성과지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선고된 체포 및 구금비율’, ‘불법 체포 혹은 구금된 이후 출감되거나 보상을 받은 피해자 비율’이다.

이와 같은 구조, 과정, 성과지표 외에 제반 인권규범 혹은 원칙을 포괄하는 인권지표(cross-cutting human rights indicators)는 특정한 집단의 인권 이행만을 배타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인권의 실행 및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 포용, 역량강화, 평등 그리고 책임성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규범과 원칙을 명시적으로 모두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이에 비해 구조, 과정 그리고 성과지표 형식으로 지표를 개발, 선택하여도 (차별유형별로) 데이터를 세분하여 지표를 설정하면 성, 장애, 인종, 종교, 언어 등에 기초한 (차별을) 지표에 담을 수 있다. 즉, 교육에 대한 접근 및 교육권 향유에서 특별집단이 차별받는 정도는 성, 인종, 종교별로 구분된 초등학교 취학을 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 인권의 참여원칙의 경우 취약 혹은 한계집단이 지표의 선정 과정 혹은 의무주체가 의무 준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무주체가 역량강화원칙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는 특정한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교육성취 지표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표에 책무성원칙의 반영은 권리의 규범적 내용을 정량적인 지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영된다.

랜드만과 국제인권기구의 지표체계 구축관련 분석을 비교하면, 랜드만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을 원칙상 권리, 실제상 권리, 그리고 정책성과를 개념화하여 지표를 발굴, 구축하였다. 이에 비해 국제인권관련기구는 인권기준에 대한 책무, 책무의 이행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개념화하여 구조, 과정, 성과지표로 구축하여 인권을 측정하였다.

이들 두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 집단을 비교하면 먼저 지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권을 개념 규정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다소 힘들다. 다만 그와 같은 과정에서 도출된 지표 비교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연구자의 인권 지표를 비교하면 먼저 랜드만의 ‘원칙상 권리를 나타내는 (일반 및 특정) 지표’는 국제인권관련기구의 ‘구조적 지표’와 유사하다. 그러나 랜드만의 원칙상 권리와는 달리 구조적 지표는 국가의 인권책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및 국내 인권 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랜드만의 ‘실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와 ‘정책성과 지표’와 국제인권기구의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국제인권기구의 성과지표는 랜드만의 실제적 권리를 반영하는 지표와 상당히 비슷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 지표는 정부의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명확히 구분된다. 이에 비해 랜드만의 실제상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와 정책성과 지표의 경우 양 지표가 측정하는 인권실현부문은 일부 중첩된다.

또한 구조-과정-성과지표는 개발정책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정책입안자와 담당자, 개발 및 인권 전문가에게 익숙한 지표체계이다. 이에 따라 인권 촉진 및 이행에 동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인권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고, 인권기준과 원칙이 정책수립과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별국가가 동 지표체계에서 도출한 특정 주요 지표를 선택하고, 해당 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권리의 이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방법론으로 지표를 구축하고, 그러한 지표 중에서도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인권을 측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로 구성된 각 권리에 대한 지표 풀(indicators pool)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풀에 대한 인권전문가, 인권 관련 공무원,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 전화조사 그리고 지표에 대한 통계 생산현황과 특성 등을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지표를 선택할 때에는 먼저 적절성(relevance)과 효과성(effectiveness) 즉, 지표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단순하고 적시적(timely)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개수로 지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표통계의 특성과 생산 여부 및 주기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다.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인권지수의 산정방법은 지표의 측정단위 및 표준화 방식, 지표 혹은 영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지수 값 산정방식과 함께 주요 인권지수의 지표 값 산정방식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 ① 먼저 가장 단순한 지수 값 방식은 개별 지표를 표준화한 이후에 단순 평균하여 영역별 지표 값을 산정하고,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권지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② 두 번째는 개별 지표의 지표 값을 합산하여 인권지수 값을 산정한 이후에, 해당 인권지수 값을 등급(혹은 구간 값)으로 구분하여 인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인권지수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는 프리덤하우스 지수이다.
- ③ 세 번째 방식은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각 지표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평균하여 특정 권리영역의 지수 값을 산정한다. 그리고 인권지수의 영역이 다수이면, 각 영역의 지표 값을 평균하여 종합 인권지수를 산정한다.
- ④ 네 번째 방식은 경제사회권 지수를 산정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비율(ratio)방식이 있다. 동 방식은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의 자원동원능력(y_i)에 대한 기본권을 향유하는 정도(x_i)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리고 개별 권리지표 값을 평균하여 경제사회권 지수 값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 ⑤ 다섯 번째 방식은 단순한 방법으로 지표 값의 크기순으로 분석대상 국가별을 서열화하여,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권수준을 측정한 인권지수는 3장에서 살펴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인권지수이다.
- ⑥ 본 연구에서는 앞의 지표체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구분해서 접근함에 따라, 인권지수를 개발할 때에 양 권리에 대한 지수 산정방법도 다르게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인권현황의 시계열적 이행 추이 분석과 함께 횡단면적으로 특정한 연도의 인권 수준을 분석을 모두 함에 따라, 시계열적인 분석과 횡단면적인 분석 등 분석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인권지수를 연도별 인권현황의 시계열적 개선 및 이행 추이 분석할 경우에는 여러 지수산정방식 중에서 세 번째의 표준점수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를 각각 표준화(normalization)한 이후에 분석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표준점수 방식으로 지표 값을 산정하고,

산정된 지표 값을 영역별로 가중(혹은 단순)평균하여 지수 값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가중 평균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영역(권리)별 가중치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단면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시민·정치적 권리 지수 산정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지수 산정방법인 개별 지표 값을 합산하여 인권지수 값을 산정한 이후에 해당 인권지수 값을 등급(혹은 구간 값)으로 구분하여 인권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정치적 권리의 이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년도 첫 해의 지수 값을 최대-최저방식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최댓값과 최솟값은 국제 비교한 시민·정치적 권리 지수에서 국제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의 점수로 하고, 우리나라 점수를 표준화(normalization)해서 산정한 시민·정치적 권리 지수의 실제 값을 백분비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개발 첫 해에 백분비를 환산한 지수 값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연도의 시계열 인권지수 값도 백분비로 환산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사회권이행지수와 같은 지표 산정방식을 사용하되,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에 대한 지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가능한 지표의 목표수준을 프론티어 회귀분석방식 등으로 설정하기보다는 OECD 회원국의 최고수준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산정된 지표 값을 영역별로 가중(혹은 단순)평균하여 지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2008 사회권 심포지엄 자료집: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우, 공석기, 정진성 (2009). *Measuring National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the Korean Experi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Human Rights and the Social : Making a New Knowledge*.
- 김태홍, 문유경 (1999). **남녀고용평등지표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 장미혜, 전기택, 주재선, 김미경, 송다영 외 (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문진영, 김진욱, 신영진, 은수미, 홍인옥 (2008).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Adcock, R., & Collier, D. (2001). Measurement validity: A shared standard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529-546.
- Donnelly, J. (2007). The relativ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29(2), 281-306.
- Fukuda-Parr, S. (2007). *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Economic Rights Working Paper Series : working paper 4). University of Connecticut.
- Humana, C. (1985). *World human rights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ndman, T. (2002).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on Statistics and Human Rights(Brussels)*.
- McNitt, A. D. (1988). Some thoughts on the systematic measurement of the abuse of human rights. In D. L. Cingranelli. (Ed.), *Human rights –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 St. Martin's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Policy Studies Organization.
- Nickel, J. W. (2007).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Rev. 2d ed.). New Jersey: Wiley-Blackwell.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8). *Human rights: A basic handbook for UN staf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 Geneva: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Puddington, Arch. (2011). *Freedom in the world 2011: The authoritarian challenge to democracy*. Freedom House. Retrieve 2011, from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1>.
- Puddington, Arch. (2012). *Freedom in the world 2012: The Arab uprisings and their global repercussions*. Retrieve 2012, from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2>.

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Ⅰ

【발표 2】

인권지표의 측정과 실행 - 유엔 인권지표 가이드의 이해

천 정 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지표의 측정과 실행

- 유엔 인권지표 가이드의 이해¹⁾

1. 유엔 인권지표 가이드 - 개관

최근 인권운동가와 정책결정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인권평가와 인권의 이행과 실행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는 2012년도에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목표와 종합적 인권평가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를 찾는 접근법과 그에 따른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조작적 도구와 함께 하나의 준거자원을 개발하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지표의 사용은 의사소통을 보다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슈와 성과를 모니터하고 후속관리 하기 쉽도록 해 준다. 잘 만들어지고 추출된 지표들은 제약점과 정책 협정(trade-offs)에 대한 공적 이해를 개선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보다 넓은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와 통계들은 적절히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진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지표에서 최대한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는 개념적으로 건실하고 경험적으로 타당성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에도 건실한 방법론에 입각해야하며,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맥락에도 적절해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지표개발을 시작한 것은 협약당사국들의 위원회 간 회의(inter-committee meeting)에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당사국” 보고서에 있는 통계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당사국이 비준한 인권조약을 준수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OHCHR은 문헌과 함께 인권을 모니터하기 위해 양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이후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작적으로 가시적인 인권 지표를 만들기

1) 이 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 2012년에 발행한 “Human Rights Indicators”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한 것이다.

위한 개념적이며 방법론적인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그 분석틀은 2006년 6월의 위원회 간 회의에서 발표하였으며 2008년 6월에 수정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많은 인권에 대하여 예시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조약 전문가,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rapporteurs), 학자, 및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전문패널의 토론이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인권기관, 정책결정가 및 인권조약의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 통계 기구와 시민사회 대표자 등이 참가하는 국가별 당사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유엔의 지표 가이드북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인권지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표라는 용어의 용도와 인권평가문헌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범주에 대해 고찰한다. 제2장은 각기 다른 인권적 기준과 공통적 규범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개발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창출하는 방법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이러한 접근법들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선택하는데 사용한 분석을 제시하고 예시적 인권지표를 표로 만들어 보이고 있다. 부록에 제시된 예시 지표들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4장의 통합적 부분이다. 마지막 제5장은 국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접근법의 요소들에 대해 개관한다. 예를 들면, 각 인권조약별 위원회들(treaty bodies)의 감시결과(concluding observations)를 추적하고 인권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발전과정을 강화하는 데 접근법과 해당 지표들을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 인권과 지표: 이론적 근거와 고려할 점

1) 인권의 특징

인권의 특징은 보편적, 양도불가적, 상호관련적, 상호의존적, 불가분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편적(universal)이란 것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양도불가성(inalienable)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래적인 것이며 정당한 과정없이, 그리고 구체적 상황없이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양여할 수 없는 것이다. 상호관련된다는 점(interrelated)은 어떤 사람의 인권의 실현을 개선한다는 것은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능이다.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라는 점은 어떤 한 권리의 향유 수준은 다른 권리의 실현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불가분(indivisible)이라는 점은 모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는 꼭 같이 중요하다. 어떤 권리의 향유를 개선하는 것을 다른 권리의 실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인권지표 - 개념과 근거

인권지표는 인권 규범과 기준과 관련할 수 있으며, 인권 원칙과 관심에 대해 말하고 반영하고, 인권의 증진과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대상, 이벤트, 활동 또는 성과의 상태나 조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이다.

지표는 양적 또는 질적이다. 양적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통계(statistics)”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질적이라 함은 내러티브나 “범주적” 형태로 표출되는 정보를 말한다. 유엔 지표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양적 지표”라는 용어는 특별히 달리 지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숫자, 퍼센트, 지수 등과 같이 주로 계량적 형태로 표현된 모든 지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동시에 인권의 실현과 관련된 정보들 - 숫자는 아니든 -을 보완하거나 그로부터 고안된 “체크리스트(check-lists)” 또는 질문, 내러티브 및 범주적 데이터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은 모니터하거나 분석하는 상황에 유용한 지표로 보인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표”라는 단어사용은 통계가 아닌, 본질적으로 질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양적 지표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 측정함으로써 계량적 평가를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질적 정보는 양적 지표의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주관적(subjective)지표와 객관적(objective) 지표라는 용어 간에도 유사한 보완성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인권지표는 또한 사실기반(fact-based) 지표와 판단기반(judgement-based)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객관적 지표이며 후자는 주관적 지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다음은 인권에 사용되는 지표의 범주를 그 실례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실기반	판단기반
양적	- 5세미만 저체중 아동 발생률 - arbitrary executions 기록된 수	- 야간 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트 - 대상국가의 표현의 자유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저널리스트 집단에 의해 점수화된 평균에 기반한 순위
질적	- 인권 조약의 비준 상태 - 신체적 폭력행위,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포함하는 사건의 실제 서술	-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내러티브 형태로 표현된 평가 - 대상국가에서 음식을 먹을 권리가 법과 실제에서 완전히 보장되는가?

출처: UN(2012), Human Rights Indicators, p. 18

[그림 1] 인권을 위한 지표 범주별 예시

실행지표와 준수지표의 개념도 구별할 수 있다. 실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의 주목적은 계획된 것과 관련한 발전개입(development intervention)에 의해 발생된 변화를 확인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실행지표는 프로그래밍 원칙과 용어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별적 프로그램 활동과 본질적으로 맞물려있다. 이러한 지표는 프로그램 활동의 실행을 모니터하고 공통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인권맥락에서 준수지표(compliance indicator)는 인권 기준을 지키는 것과 확실히 관련된다. 그러한 인권기준으로부터 제시되는 의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권의 개선된 향유와 연관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인권지표의 개념화

1) 인권 측정과 관련한 이슈들

인권평가에 사용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다. 무엇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지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인권의 이행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지표들은 몇 개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개발된 지표는 국가들을 인권 실행 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등이다. 지표를 개념화하는 접근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와 그 전제가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념적 분석틀

유엔 지표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분석틀은 2가지 접근법(a two-part approach)이 있는데, 첫째는 인권의 속성적 특징(attributes)을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권리와 연관된 기준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측면을 밝히는 지표군(cluster)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속성적 특징(attributes)의 중요성이다. 인권조약의 조문들은 적절한 지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권의 법적 기준에 대한 내러티브를 해당 권리에 관한 몇 가지의 특징 또는 속성적 특징으로 풀어쓰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권리의 속성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적절한 지표나 지표군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촉진되고 분명하고, 구체화된 보다 “유형적(tangible)” 범주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 제시된 예시지표들에서 나타난 인권에 대해서는 평균 4개의 속성적 특징들로 그 핵심적 규범적 내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권(right to life)의 경우, 주로 세계인권선언 3조, 자유권규약 6조, 국제인권위원회의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6(1982)에 입각하여, 불법적인 “생명박탈(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실종(disappearances of individuals), 보건과 영양, 사형 등의 네 가지 속성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보건권(right to health)은 주로 세계인권선언 25조, 사회권 규약 12조, 유엔사회권 규약 위원회 일반논평 14(2000),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24(1999), 아동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2003), 4(2003) 등에 입각하여 다섯 개의 속성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생식 및 재생산 보건(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유아사망율과 보건(child mortality and health care), 환경 및 산업 위생(natural and occupational environment),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prevention, treatment, and control of diseases), 의료 시설과 필수 의약품 접근성(accessibility to health facilities and essential medicine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속성적 특징을 규명한 다음 단계는 규범적 기준과 그러한 속성적 특징에 관련된 의무를 위한 지표 선택과 개발에 일관된 접근법을 갖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 이행의 각기 다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각기 다른 유형의 지표를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주체(duty bearer), 주로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권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실현에 상응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성과를 가져온 과정들이 관련 인권 기준에 맞는 지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서는 국가의 이행책무(commitment), 노력(efforts), 결과(results)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과정-성과(structure-process-outcome)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구조적 지표(structural indicators)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제도적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법적 도구와 존재를 비준하고 채택하는 것을 반영한다. 당사국이 인권조약을 비준한다면 그 기준을 이행하는 책무(commitment)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지표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기준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지 등에 초점을 둔다. 구조적 지표는 또한 해당 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정책과 전략과 관련된다. 국가의 정책계획은 통상 주제별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목표, 정책들, 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개관하게 된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의 인권의무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권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구조적 지표는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파악하는 것과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조항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를 비롯하여, 적합한 식생활에 대한 권리(제6조) 등 14가지 권리와 관련한 예시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권과 관련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access to decent and productive work)”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시된 구조적 지표를 통해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적 지표로는 “노동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과 국제노동기구의 규약 및 협약”, “헌법 혹은 다른 상위법에서 노동권 시행 시점과 적용범위”, “기회 평등 보장과 제반 고용차별 철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노동권 실행을 위한 국내법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의 4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완전 및 생산적 고용을 위한 국가저액의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법정 주당 최대노동시간”, “직업유형별 최저고용연령” 등의 5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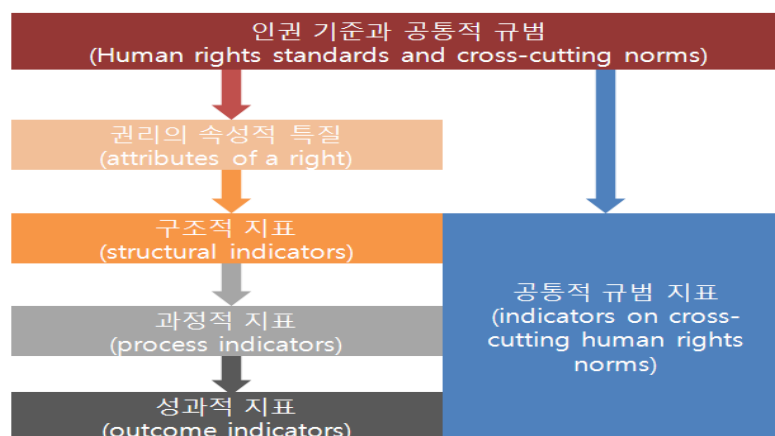
둘째,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는 의무주체들이 인권적 책무를 바람직한 결과로 전환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측정한다. 구조적 지표와는 달리, 과정지표는 의무주체들이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는 정책과 구체적인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정책수단(state policy measures)은 국가발전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공공 프로그램, 예산배분, 구체적인 규제적 개입 등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인권 실현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치들(steps)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기초로 과정지표를 구축하면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으며, 특정 권리에 대한 과정지표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권리에 대한 구조지표 혹은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는지, 의무주체의 실행 노력을 명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지표 중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권과 관련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access to decent and productive work)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시된 과정지표를 보면,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목표집단 비율”, “학력별 연간 고용증가(직업창출율)”,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의 무급가족돌봄(unpaid domestic or family care work)과 무급가족 노동(unpaid work in family business)에 투입하는 평균시간” 등 6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권향유 상태를 반영하는 개인적·집단적 성취, 즉, 인권실현 상태를 파악하게 한다. 인권의 이행정도 뿐만 아니라 권리의 향유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시간경과에 따라 다양한 과정(몇 가지의 과정지표로 파악가능)의 영향을 통합하며, 과정지표보다는 순간적 변화에 덜 민감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이다. 예를 들면, 평균기대수명 지표는 면역, 공중보건에 대한 지각, 적절한 영양에 대한 접근성 또는 신체적 폭력과 범죄의 감소에 따른 성과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등과 같은 보고사례와 관련된 성과는 보통 수사를 담당하는 법단속경찰의 훈련과 행동에 대한 책무성을 개선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들과 관련을 갖게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유량지표(flow indicator)와 저장지표(stock indicator)로 각기 이해할 수도 있다. 유량지표는 특정한 기간 동안 측정된 실직상태로 전환된 취업자 수와 같이 일정기간동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되며, 저장지표는 2012년 12월 말에 측정된 실업자 수 등과 같이 한 시점에서의 변화의 통합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지표 중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권과 관련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access to decent and productive work)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보면, “성별, 목표집단, 그리고 학력별 고용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s)”, “전체 시간제(part-time)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 “비농림부문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비율”, “단기,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proportion of workers in precarious employment)” 등 5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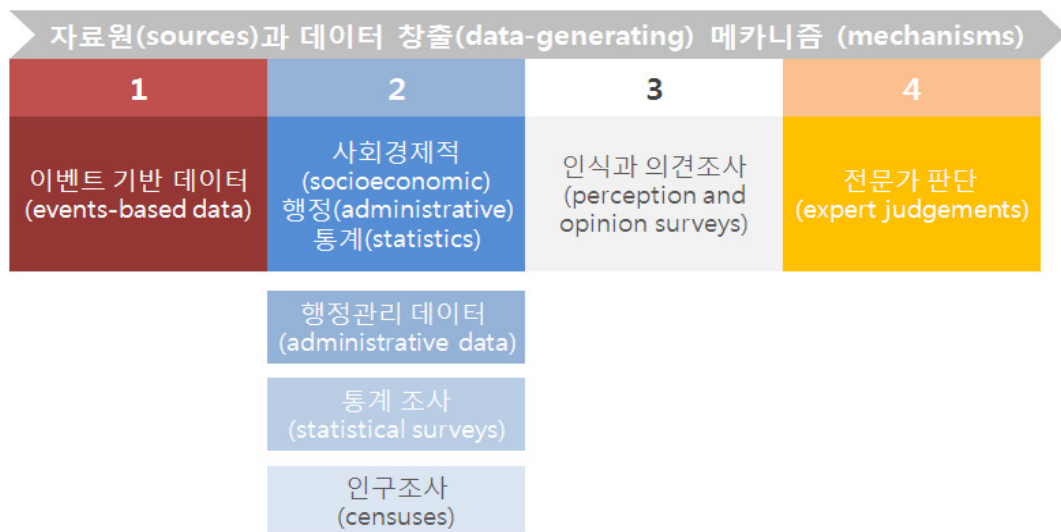
출처: UN(2012). p. 39.

[그림 2] 유엔 인권 지표가이드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적 분석틀

4. 인권지표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인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규명하는 것을 돕는 개념적 분석들은 효과적인 방법론적 접근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지표들이 필수적인 데이터들과 함께 널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표는 명료성 및 엄밀하게 개념 정의되지 않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확산하는 받아들이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에 입각하지 않거나, 규칙적으로 입수가가능하지 않으면 인권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엔의 인권지표 가이드에서는 세 가지 측면의 방법론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의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는 지표 선정에서의 윤리적, 통계적 인권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둘째는 인권지표를 위한 주요한 데이터 산출 메카니즘과 자료원은 무엇인지, 셋째는 인권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를 성분별로 분산(disaggregation)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점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의 자료원과 데이터 산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인권위반과 관련된 사건(event)에 입각한 데이터, 사회경제적 행정통계, 인권관련 이슈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제한된 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informed experts)들의 도움으로 인권상황을 판단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행정통계에는 행정관리 데이터와 통계조사 및 인구센서스가 있다.



출처: UN(2012). p. 52

[그림 3] 지표 자료원과 데이터 창출 메카니즘

	administrative data	statistical survey	ensus
포함 기준	모든 정책적 관심사 또는 규칙 틀을 기록함	인구 샘플만 포함	인구수 계산 마침
비용	낮음	중간	높음
빈도	지속적	3-5년	10년
편견	불완성 또는 부정확 기록(의도적, 비의도적)은 편견	중요한 편견의 위험이 있지만, 조사계획이 잘되면 최소화가능	이론적으로는 편견 없으나, 적절한 보완이 없다면 편견발생
모니터링과 정책결정가를 위한 잠재성	매우 양호	양호	양호, 단기적 비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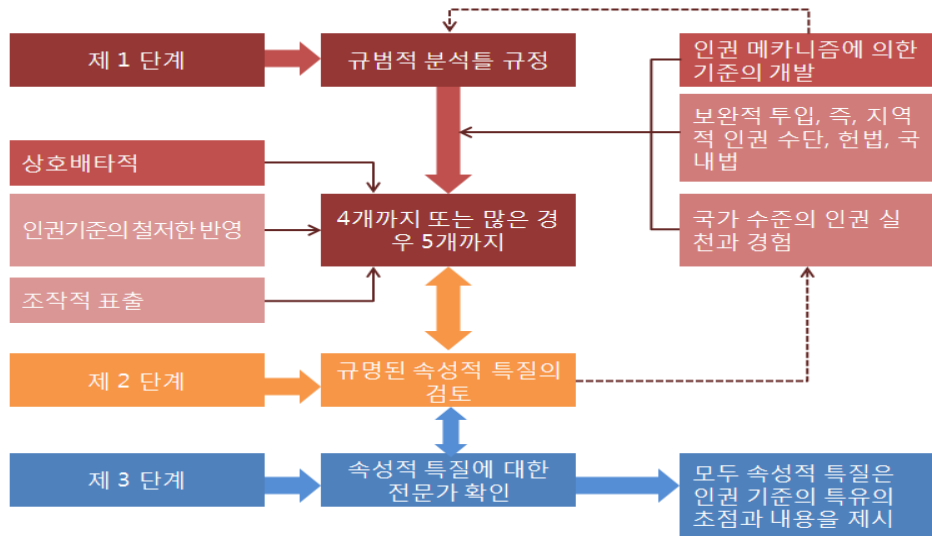
출처: UN(2012), p. 64

[그림 4] 사회경제적 및 행정적 통계 자료원의 특징

5. 인권지표 분석틀의 예시

유엔 지표가이드의 제4장에서는 이 전의 챕터에서 제시된 개념적, 방법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중요한 인권 지표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각기 다른 표를 구성하는 공통적 고려사항을 강조하면서 인권의 속성적 특질을 선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추론(reasoning)의 예와 그에 상응하는 지표군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대한 절차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부 예시 지표의 대표적 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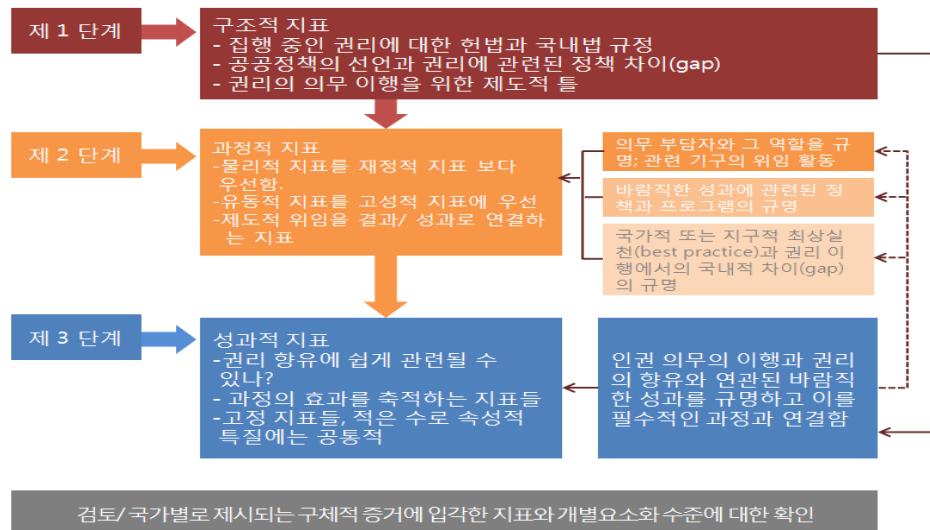
제4장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로 지표를 제시하는데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둘째, 인권의 속성적 특질을 규명하거나 인권 적실성에 관한 주제를 찾는 단계는 무엇인가? 셋째, 권리의 각 속성적 특질에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넷째, 국가 수준에서 지표의 소유권을 개념화하고 구축하는 예비단계는 무엇인가?



출처: UN(2012), p. 76.

[그림 5] 속성적 특질의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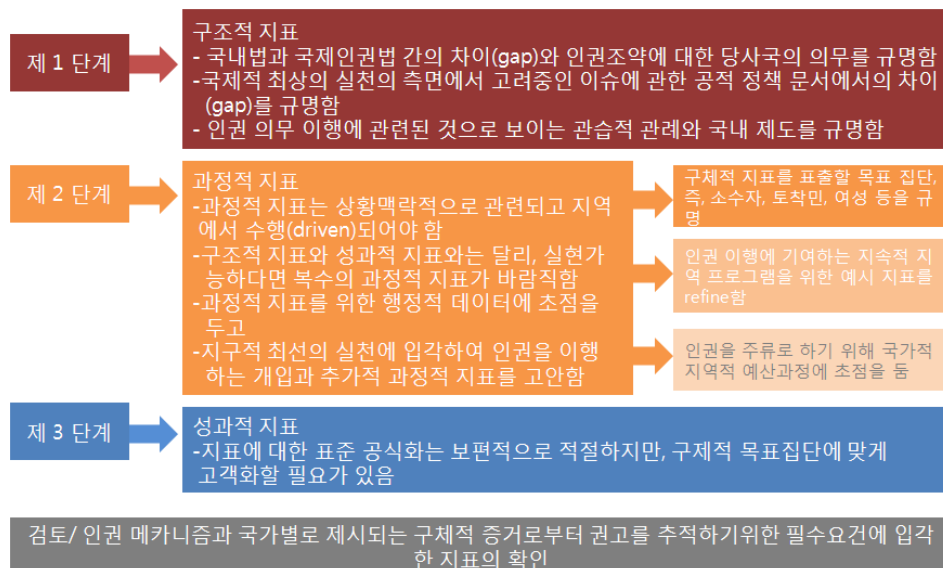
통계와 지표들은 인권 평가와 모니터링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좋은 통계는 얻기 어려우며 외국 상황에 단순히 들여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에 의미있게 될 때와 국가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소유권을 가질 때 최적화될 수 있다.



출처: UN(2012), p. 78

[그림 6] 지표의 선정

지표를 국가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는 지표의 세 가지 범주에 각기 상응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나 구조적 지표와 성과적 지표를 상황맥락화시키는 필요성은 그 본질을 고려하면 제한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는 제4장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조항에 따라 14개의 예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② 적합한 식생활에 대한 권리(제25조) ③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제25조) ④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제5조), ⑤ 공무참여권(제21조) 등을 비롯하여 ⑥ 제26조, ⑦ 제25조, ⑧ 제23조, ⑨ 제22조, ⑩ 제19조, ⑪ 제10조-11조, ⑫ 제1-5조 및 제16조, ⑬ 제1조, 2조, 및 7조, 그리고 ⑭ 생명권 (제3조)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출처: UN(2012). p.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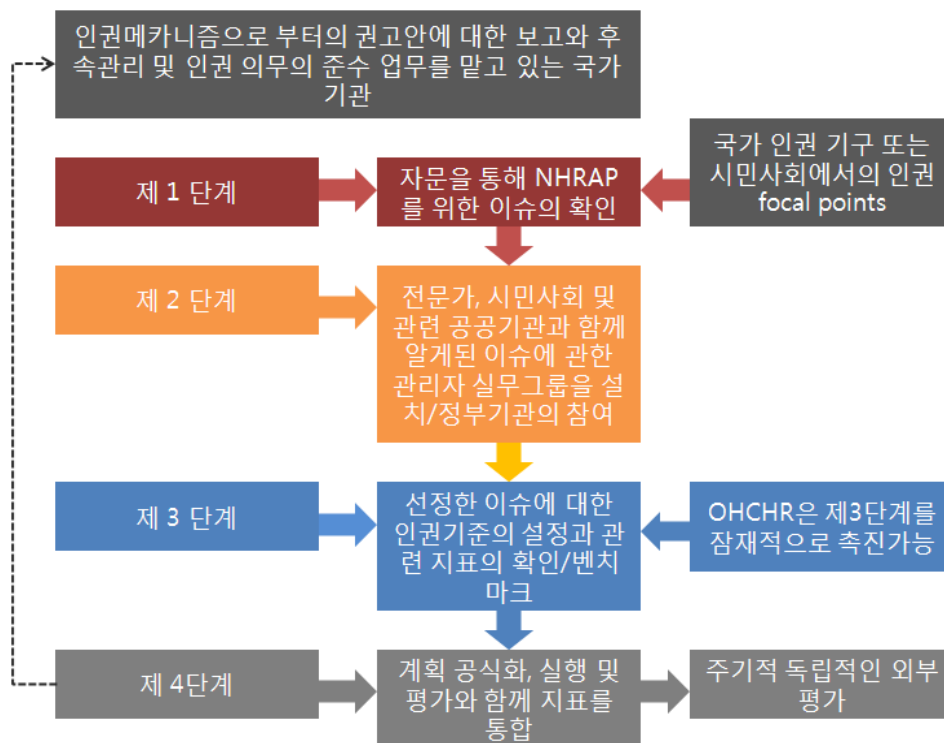
[그림 7] 지표의 상황맥락화

6. 실천 분석틀: 권리의 이행과 모니터링

유엔 인권지표가이드에서 제시된 지표 분석틀을 국가 단위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적절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점과 주기성, 분석 기법 및 인권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적절한 자원의 결여와 인권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등과 관련된다.

인권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러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제5장은 바로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일부 국가 단위의 이니시어티브를 강조하고 적용한 단계를 예시한다. 제5장의 목표는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인권을 위한 지표사용이 가장 유용한 곳은 어디인가? 둘째, 인권평가를 위해 이용가능하고 규명된 지표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가? 셋째, 인권 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단위에서 지표를 사용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한편, 인권모니터링 시스템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가 따른다. 즉, 모니터링 주관자 확인(1단계), 국가 소유의 모니터링 메카니즘 촉진(2단계), 주요 취약 집단의 확인(3단계), 비차별과 접근성에 초점(4단계), 데이터 수집과 개별요소화를 위한 역량구축(5단계), 주기성 보고, 공포,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성과 후속관리(6단계) 등이다.



출처: UN(2012). p. 116

[그림 8]지표 분석틀과 국가 인권 행동 계획

측면	최상 실천	부적절한 반응
정치적 약속	정치적 후원 또는 민주적 정권, 잘 개념정의된 인권 책임성	내키지 않거나 비민주적인 정권, 인권 비민감적, 책임의 분산
부처와 행정조직	명료한 위임과 이슈에 대한 종합적 포함, 인권 의무에 대한 자각, 잘 조직화된 데이터 수집과 배포	중첩 또는 분산된 위임, 인권 비민감적 또는 무지, 능력부족 또는 비규칙적 데이터 수집과 배포
국가 인권 기구(NHRI)	독립적, 조직화, 적절한 재정 확보, 접근성, 잘 개발된 인권계획, 모니터링과 분석을 위한 역량의 구비	약하고 나쁜 자원 또는 비존재, 비접근성과 비규칙적 인권 계획
상황구체적 취약집단을 위한 제도기구	효과적인 제도기구, 권리를 모니터링하는 능력, 동등한 기회 및 취약집단의 복리	약하고 나쁜 자원 또는 비존재, 분산된 위임과 신뢰성 부족
국가 통계기관	독립적, 통계적 검토와 배포를 위한 메카니즘,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인권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의지와 장비구비	인권 관심사에 대한 순응적이고 나쁜 자원 또는 회의적, 데이터의 잘못된 수집과 배포
지표와 모니터링 방법론	상황적으로 관련된, 지표의 규명, 건전한 데이터 수집 수단, 규칙적 분석과 보고	부적절하고/받아들인 지표, 약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분석, 비접근적 기록
유엔인권메카니즘의 권고안에 대한 보고와 후속관리	잘 지명된 비서와 자문 과정, 적시적 보고와 후속 절차	임시변통, 단편적 또는 비존재적 자문과정, 비규칙적 또는 비보고적
인권관리자 관여와 시민사회단체	자원이 좋고, 독립적이며, 가시적인 시민사회단체, 유엔 도구화와 실천의 지각	약하고 제약된 시민사회, 비규칙적 또는 가끔 적대적인 보고, 유엔 실천에 대한 잘못된 정보
미디어 자유와 동기	독립적, 활발하며 민감한 미디어, 인권 독해적	통제된 또는 소극적이며 순응적인 미디어, 제한된 범위와 신뢰성
정보권	시행과 통일된 집행	시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되지 않음

출처: UN(2012), p. 134

[그림 9]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 모니터링 - 실상 점검

7. 유엔 인권지표 가이드의 의미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지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적 방법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권규약의 관련 조문과 인권위원회 일반 논평에 제시된 인권과 관련된 규범적인 내용을 담은 지표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김태홍 외, 201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지표가이드의 목적은 인권의 이행을 증진하고 모니터링하는 상황민감적 지표를 찾는 일의 바탕이 되는 접근법에 대한 개념적, 방법론적, 경험적 측면을 포함하는 문건들을 갖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는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힘있게 구축하고 정책결정과 그 이행과 모니터링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하나의 분석틀의

요소들을 제공한다.

유엔의 인권지표가이드는 인권기준에 대한 책무, 책무이행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개념화하여 구조-과정-성과지표로 구축하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과정-성과 지표는 개발정책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정책입안자와 인권전문가에게도 익숙한 지표체계로 볼 수 있다. 인권의 촉진과 이행을 위해 유엔인권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책 수립과 개발과정에서 인권기준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태홍 외, 2012).

인권지표에 대한 수요와 사용은 권리를 이행하고 모니터하고 실현하는 체계적인 작업의 보다 넓은 과정의 일부이다. 국가인권행동계획, 발전과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기초연구(baseline studies)와 인권-기반 접근, 유엔 인권 메카니즘의 감시업무(oversight work),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 인권기구 들과 함께, 지표는 인권을 집행하고 그 이행을 측정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통계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인권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는 방향으로 옮겨가야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일반 통계는 보통 간접적이고 적용할 때 명료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표는 관련성 있는 인권 규범 틀에 내재화되고 잠재적 사용자에게 의해서 해석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인권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양적, 질적 지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지표란 단지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자료에서 적절히 구성된다면, 그것이 인권 평가에 가치를 추가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지표는 인권의 실행을 보다 목적적이며 투명하게 하고 확실한 후속적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지표는 질적 또는 내러티브 기반 평가, 사법적이거나 준사법적 평가 및 다른 종합적 평가를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들은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국제아동보호기구 등의 국제단체와 미국, 독일, 아이슬란드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및 청소년인권 인프라 등과 관련된 영역별 또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거나 개발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별 범주화를 통한 접근은 지표체계의 분류의 편의성은 제공해주지만, 이론적 체계를 결여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지표 가이드는 이러한 점에서 지표체계를 구분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경험론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인권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지표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론적 체계를 갖는 구조 속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인권수준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지표개발의 방향과 정량지표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Andrew & Kuafman, 1999).

첫째는 지표의 자료원에 대한 것으로 유엔 인권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데이터, 센서스와 서베이, 1차적 사회연구데이터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표구성에서 비용과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지표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접근이 용이한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표는 보다 나은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동일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역별 실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향후의 정책수립을 위해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지표는 지속적 모니터링의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표하는 일은 사회의 진보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홍, 윤덕경, 김영택, 주재선, 배호중, 김기곤 (2012). *국가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201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
회.
-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 Andrews, A. B., & Kaufman, N. H. (1999).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development*. Westport, CT: Praeger.
- UN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Ⅰ

【발표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김 영 지 ·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민 희 (평택대학교 교수) ·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¹⁾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과정

가. 개요

- 2006년부터 추진된 인권실태 연구는 크게 두 개 시기로 구분됨. 제1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일환으로 지표개발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5년간이며, 제2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I)’가 추진되는 6년간임. 2009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 2006년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주기적·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진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인프라 등 5개 영역, 152개(정량 77개, 정성 75개)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
-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홀수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짝수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을 조사하여, 인권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실태조사가 4년에 걸쳐 총2차례 실시되었음.
- 그러나 상호불가분성과 연관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인권내용을 4개로 구분하고 이를 2개 영역씩 나누어 각기 다른 해에 조사함에 따라 인권지표로서의 정체성 부족, 중요 인권지표의 누락, 인권실태의 통합적 파악 제한, 이론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음. 이에 따라 2011년~2012년에는 결과분석 틀을 4개의 인권영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틀로 전환하여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함.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도 연구사업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의 일환으로 정리된 중간 결과물로, 최종 연구결과가 아니므로(12월 말 예정)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에는 2011~2012년의 지표체계화 작업을 보완하고,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합안을 마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2개의 인권영역씩 격년으로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통합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시스템을 전환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실태 파악을 수행함.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 및 인권상황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도록 함(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2017년 6월 19일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예정).



[그림 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계획(안)

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발

1) 2013년 지표체계 개발 기준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3개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호~17호, 유니세프 등 국제 민간단체의 협약 해설서, 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1996, 2005, 2010)

→ 2010년에 2차 수정본이 발표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표 1>)의 각 영역이 지표체계의 대분류 단위가 됨. 2011~2012년에는 1, 2, 3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을 설정하였고, 2013년에는 1, 2, 3 영역을 ‘인권 일반’으로 구성하여 총 6개 대분류 영역을 설정함.

표 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²⁾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인권 일반	○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협약 홍보(제42조) ○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2. 아동의 정의		○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3. 일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아동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이름과 국적(제7조) ○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 사생활의 보호(제16조) ○ 정보접근권(제17조) ○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2)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2(2010, 11, 23))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위내용 (협약 조항)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부모의 자녀지도 책임과 권리 및 의무(제5조, 제18조 1항), 부모의 양육 지원 및 아동보호 시설 및 서비스 개발(제18조 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 입양(제21조)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아동학대, 유기(제19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장애아동(제23조) ○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와 건강한 생활양식 촉진 ○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 약물남용(제33조) ○ 부모가 투옥된 아동, 모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아동 보호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제18조 3항) ○ 영양, 의복, 주거 등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 2, 3항)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에의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8. 특별 보호 조치	6. 특별보호조치	○ 난민아동(제22조) ○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착취상황 하의 아동 - 경제적 착취(제32조) - 약물남용(제33조) - 성적착취 및 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및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 법에 저촉된 아동,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2) 2011~201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2011~2012년도에는 4개의 인권영역 분류들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틀로 재구성하여 시민적 권리와 자유(34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8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4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34개), 특별보호조치(8개) 등 5개 영역에 총 136개 지표를 산출함.
- 이 시기에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영역별로 제시된 조항을 지표 하위영역으로 삼았으며 중간단위 분류단계 없이 하위영역별로 개별 지표항목을 제시함.

표 2 2011~201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³⁾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현의 자유 (제13조)	-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경험도	- 사회참여 경험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참여권 보장 수준	-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정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참여권 보장 수준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	- 결사·집회 경험률	- 참여의 장애요인
		-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3) 임희진, 김현신(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pp. 343-357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 및 빈도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학교상황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정보 접근권 (제17조)	-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어린이도서관 수	-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 교급별 학교도서관 설치율
		- 매체 이용률	- 매체 이용률
		- 유해매체 이용률	-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
		-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률
			- 최근 1년간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1항)	- 체벌 경험률	- 최근 1년간의 체벌 경험 여부 및 빈도
		-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의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유무 및 빈도
		-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 사이버 상에서 피해 시, 대처방법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 부모·자녀 관계	- 부모·자녀 관계
		-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여부
		- 보육시설 수	-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소년소녀가정 현황	-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국내·외 입양 현황	- 소년소녀가정 현황
		- 가출청소년 비율	- 국내·외 입양 현황
		-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 가출인 발생 현황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최근 1년간 가출경험 유무
			- 가출인 처리 현황
			-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및 제39조)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가출 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 혹은 기관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 청소년쉼터 시설 수 및 보호청소년 현황
		- 방임 경험률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제25조)	-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장애 청소년 취업률	-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 (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통합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 인공임신중절률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 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 15-19세 출산율	-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0세의 기대여명	- 0세의 기대여명
		- 사고 사망률	-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자살률	- 자살률 추이 -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 범죄 피해건수	-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거주지 및 학교주변의 범죄 위험에 대한 안전성 인식률
	보건 서비스 (제24조)	- 영아 사망률	- 영아 사망률 추이
		- 아동·청소년 사망률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 건강검진율	-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아동·청소년) -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보호자)
		- 의료급여 대상자 수	- 의료급여 대상자 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 주관적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 비만율	- 아동·청소년의 비만도 -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률
		- 운동실천율	-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학교 체육 시간 제외)
		- 아침식사 결식률	-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 수면시간	- 평일 평균 수면시간
		-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행복도	-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 행복도
			-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 성교육 경험률	- 최초의 성교육 시기
			- 최근 1년간 성교육 경험 여부
			-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횟수
			- 성교육 도움 정도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 흡연율	- 현재 흡연율 추이
		- 음주율	- 현재 음주율 추이
		-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	-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	-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	-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생활수준 (제27조 1항, 2항, 3항)	- 빈곤율	- 절대빈곤율 변화 추이
			- 지역별 아동청소년 빈곤율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 최근 1년간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 여부와 빈도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 방과후 학교 참여실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학교 현황	- 학교급별 규모
		- 취학률	- 취학률
		- 진학률	- 진학률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진로교육 경험률	- 진로교육 경험 유무 - 진로관련 경험
		- 진로교육 만족도	- 진로교육 만족도
		- 학업 중단율	- 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교사 배치 현황
		- 학교상담교사 배치율	-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교사 배치 현황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 시 힘들었던 점
	교육의 목표 (제29조)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업성취도	-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PISA 결과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 학습부진아 출현율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학교수업 이해도	- 학교수업 이해도 - 학교수업 진행 수준
		- 학교수업 만족도	-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 사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 사교육 효과성
		-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정도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인권교육 실시율	- 인권교육 실시율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연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청소년수련시설 수	-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여가·오락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 동아리 활동 참가율	-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 동아리 활동 형태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 여가활동 만족도	-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특별 보호 조치	법적 분쟁상의 아동	-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 소년범죄 처리 현황
	착취 상황하의 아동	- 평균 근로 시간	-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 시간
		-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 점검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 근로여건 만족도	- 근로여건 만족도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 성매매 경험률	- 조건만남 경험
		- 성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 유무 - 성피해 보호자 인지율 및 경찰 신고율 - 성피해 의논 대상

3)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2013년에는 2011~201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항목’의 틀로 체계화하고자 함.

표 3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1. 일반조치 및 일반원칙	1-1. 인권 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1-1. 인권 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인지도
		1-1-2. 인권의식	1-1-2-1. 인권감수성과 태도 1-1-2-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1-3. 인권수준	1-1-3-1.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 일반원칙 (제2조)	1-2-1. 차별금지	1-2-1-1. 차별경험
			1-2-1-2. 차별의식 및 태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이름과 국적(제7조)		
	2-2.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제8조)		
	2-3.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3-1. 가정에서의 참여	2-3-1-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2-3-2. 학교에서의 참여	2-3-2-1.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 권 보장정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2-3-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3-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3-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3-3. 사회 참여	2-3-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2-3-3-2. 청소년참여기구 활동경험
			2-3-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2-3-3-4. 참여권 보장 수준
			2-3-3-5. 참여의 장애
	2-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4-1. 양심적 병역 거부	2-4-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2-4-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4-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5.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	2-5-1. 결사·집회	2-5-1-1. 결사·집회 경험률
	2-6.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6-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2-6-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6-2. 학생 정보 보호	2-6-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2-6-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7. 정보접근권 (제17조)	2-7-1. 매체에 대한 접근	2-6-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7-1-1. 매체 이용률
			2-7-1-2. 유해매체 이용률
			2-7-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7-1-4. 어린이도서관 수
			2-7-1-5.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2-7-2. 알권리	2-7-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8.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8-1. 체벌	2-7-2-2.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2-8-1-1. 체벌 경험률
		2-8-2. 정서적 학대	2-8-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2-8-3. 청소년 폭력	2-8-3-1. 폭력피해 경험
			2-8-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3-1-1. 보호시설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3-1-1-2. 보육시설 수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3-1-1-7.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의 지도관련 지표로 추가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3-2-1. 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정	3-2-1-1. 가출청소년 비율
			3-2-1-2.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3-2-1-4. 소년소녀가정 현황
		3-2-2. 대안적 양육	3-2-2-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3-3. 입양(제21조)	3-3-1. 입양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3-4.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3-4-1. 학대·방임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3-4-1-2.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3-4-1-3. 방임 경험률
	3-5.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5-1. 보호 기관 심사	3-5-1-1.
	4-1. 장애(제23조)	4-1-1.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	4-1-1-1.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2-1-1. 15-19세 출산율
			4-2-1-2. 0세의 기대여명
			4-2-1-3. 영아 사망률
			4-2-1-4. 아동·청소년 사망률
			4-2-1-5. 사고 사망률
			4-2-1-6. 자살률
			4-2-1-7. 고민거리 대화 상대
			4-2-1-8. 범죄 피해건수
			4-2-1-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4-2-1-1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4-3. 보건서비스(제24조)	4-3-1. 건강 관리 조치	4-3-1-1.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4-3-1-3. 학교급식 만족도
			4-3-1-4.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4-4-1. 건강 평가 및 관심도	4-4-1-1. 주관적 건강평가
		4-4-2. 신체적 건강	4-4-2-1. 운동실천율
			4-4-2-2. 아침식사 결식률
			4-4-2-3. 수면시간
			4-4-2-4. 비만율
			4-4-2-5. 청소년 유병률
		4-4-3. 정서적 안정	4-4-3-1. 우울증 지수
			4-4-3-2. 스트레스 인지율
			4-4-3-3. 자아존중감
			4-4-3-4. 행복도
	4-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4-5-0-1. 성교육 경험률
	4-6.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4-6-1. 예방교육	4-6-1-1.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4-6-2. 음주·흡연	4-6-2-1. 흡연율
			4-6-2-2. 음주율
	4-7.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7-1-1. 빈곤율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4-7-2-1.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4-7-2-2.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5-1-1. 인지발달 기회	5-1-1-1. 취학률
			5-1-1-2. 진학률
			5-1-1-3. 학업중단율
			5-1-1-4. 학교부적응
			5-1-1-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5-1-1-6. 학생 1인당 사교육비
			5-1-1-7. 사교육 경험률
			5-1-1-8. 하루 평균 학습시간
		5-1-2. 진로준비 기회	5-1-2-1. 학교상담교사 배치율
		5-1-3. 학교 규율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5-1-3-1. 교육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인식도
			5-1-3-2. 학교 규율의 아동·청소년 존엄성 일치 조치
	5-2. 교육의 목적 (제29조)	5-2-1. 아동·청소년 존엄성 존중	5-2-1-1. 교원 1인당 학생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5-2-1-2. 학습부진아 출현율
			5-2-1-3. 재능의 계발
			5-2-1-4.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5-2-1-5.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비 교육
			5-2-1-6.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정도
		5-2-2. 학교의 의미	5-2-2-1.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주관적 인식
	5-3. 인권교육 및 시민교육	5-3-1. 인권교육	5-3-1-1. 인권교육 실시율
	5-4.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5-4-1. 문화여가 활동	5-4-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5-4-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5-4-1-3.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5-4-1-4.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5-4-1-5.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5-4-1-6. 휴일을 보내는 방법
			5-4-1-7. 여가활동 만족도
		5-4-2. 아동·청소년 활동	5-4-2-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5-4-2-2. 동아리 활동 참가율
			5-4-2-3.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5-4-3. 소수집단 문화적 권리	5-4-3-1.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도
6. 특별 보호 조치	6-1. 난민아동 (제22조)	6-1-1. 난민아동	6-1-1-1. 연도별 난민 현황
			6-1-1-2.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6-1-1-3.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6-2.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39조)		
	6-3. 착취 상황하의 아동 (제32조, 제34조, 제39조)	6-3-1. 경제적 착취	6-3-1-1.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6-3-1-2.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6-3-1-3.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6-3-2. 성적 착취	6-3-2-1. 청소년성매매 연간 발생 현황
			6-3-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6-3-2-3.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6-3-2-4.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현황
			6-3-2-5.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경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6-4.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6-5. 법에 저촉된 아동	6-5-1. 소년사법	6-5-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현황
			6-5-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6-5-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6-5-1-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6-5-1-5.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비율
			6-5-1-6.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6-5-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6-5-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6-5-1-9.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6-5-1-10. 보호소년 수용현황
		6-5-2.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제37조 나, 라), 사형 및 중신형 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 (제37조 가)	6-5-2-1. 소년범죄 처리 현황
			6-5-2-2. 소년범죄자 구성비
			6-5-2-3.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6-5-2-4.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6-5-2-5. 소년범죄 성별 현황
			6-5-2-6.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6-5-2-7.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6-5-2-8.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6-5-2-9.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6-5-2-9.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6-6. 소수 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가. 인권 일반

표 4 대분류 영역 1. 인권일반: 지표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1. 일반 조치 및 일반원칙	1-1. 인권 일반(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1-1. 인권 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인지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3.1)~3) 초등용: 문 35.
		1-1-2. 인권의식	1-1-2-1. 인권감수성과 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6.1)~4) 초등용: 문 38.
			1-1-2-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7.1)~7) (초등 제외 문 47.3, 5)) 초등용: 문 39.
		1-1-3. 인권수준	1-1-3-1.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고용: 문 51. 초등용: 문 42.
	1-2. 일반 원칙(제2조)	1-2-1. 차별금지	1-2-1-1. 차별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5.1)~8) 초등용: 문 37.
			1-2-1-2. 차별의식 및 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8.1)~4) 초등용: 문 16.

나.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 5 대분류 영역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지표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이름과 국적(제7조)			관련 행정통계 검토 요
	2-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2-3. 의견 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3-1. 가정에서의 참여	2-3-1-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1.1)~4) (초등 제외 문 21.2)) 초등용: 문 19.
		2-3-2. 학교에서의 참여	2-3-2-1.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 결정권 보장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1) (초등 제외)
			2-3-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2) 초등용: 문 32.
			2-3-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5.1)~3) (초등 제외)
			2-3-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6. (초등 제외)
		2-3-3. 사회 참여	2-3-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1). 행정통계
			2-3-3-2.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8. (초등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2-3-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0. (초등 제외)
			2-3-3-4. 참여권 보장 수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1. 초등용: 문 33.
			2-3-3-5. 참여의 장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2. 초등용: 문 34.
	2-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4-1. 양심적 병역 거부	2-4-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2012 병무청의 정보공개자료. 행정통계
		2-4-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4-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3) (초등 제외)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1). 행정통계
	2-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5-1. 결사 · 집회	2-5-1-1. 결사 · 집회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9.1)~3) (초등 제외)
	2-6.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6-1. 용모 · 복장 · 소지품 검사	2-6-1-1. 학교에서의 용모 · 복장 · 소지품 검사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4.1)~3) (초등 제외)
		2-6-2. 학생 정보 보호	2-6-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4) (초등 제외))
			2-6-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5) 초등용: 문 32.
			2-6-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6) 초등용: 문 3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2-7. 정보접근권 (제17조)	2-7-1. 매체에 대한 접근	2-7-1-1. 매체 이용률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7-1-2. 유해매체 이용률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7-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대한출판문화협회(2011). 행정통계
			2-7-1-4. 어린이도서관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행정통계
			2-7-1-5.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 개발원(각 년도). 행정통계
		2-7-2. 알권리	2-7-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7) 초등용: 문 32.
			2-7-2-2.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4.1)~3) 초등용: 문 36.
	2-8.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8-1. 체벌	2-8-1-1. 체벌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4.1)~4), 문 24-1.1)~2) 초등용: 문 22. 문 22-1.
		2-8-2. 정서적 학대	2-8-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2-8-3. 청소년 폭력	2-8-3-1. 폭력피해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5.1)~6) 초등용: 문 23.
			2-8-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6.1)~5) 초등용: 문 24.

2-3. 의견표명권

2-3-1. 가정에서의 참여

2-3-1-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 정의: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산식: (의사결정 시 부모(보호자)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2. 학교에서의 참여

2-3-2-1.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정의: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추가학습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 산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추가학습의 선택 및 참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 정의: 학교 규칙 및 규정 등의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
- 산식: (교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정의: 학생 대표의 선출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결정이 보장되는 정도
- 산식: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정의: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산식: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 전달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3. 사회 참여

2-3-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 정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또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해당 정책의 수혜자이자 시설 사용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에 대한 정도
- 산식: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2-3-3-2. 청소년참여기구 활동경험

- 정의:
- 산식: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 정의: 선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의사표현방식
- 산식: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정의: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참여율
- 산식: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자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정의: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 산식: 17대~19대 국회의원 선거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 자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검토)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정의: 청소년이 자신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거나 청소년 관련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 산식: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3-3-4. 참여권 보장 수준

- 정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 산식: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3-3-5. 참여의 장애

- 정의: 아동·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요인
- 산식: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장애 이유에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4-1. 양심적 병역 거부

2-4-1-1.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율

- 정의: 자신의 종교적 양심, 평화의 전쟁반대의 신념 등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 산식: 연도별 병역거부자 수
- 자료원: 병무청(2012). 연도별 병역거부자 현황 및 형사처벌 통계

2-4-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4-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정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열리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산식: (교내 종교행사에 원하는 사람만 참석한다고 응답한 종교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수/종교학교 재학 중인 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산식: 종립 초·중·고등·대학교 종교학교 현황 수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1). 한국의 종교 현황

2-5. 결사 및 집회의 자유

2-5-1. 결사·집회

2-5-1-1. 결사·집회 경험률

- 정의: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결사 및 집회 행동을 해 본 경험 정도
- 산식: (사회문제에 대한 결사 및 집회 경험이 있는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6. 사생활의 보호

2-6-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2-6-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정의: 학교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를 경험한 정도
- 산식: (용모/복장/소지품 검사를 경험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6-2. 학생 정보 보호

2-6-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정의: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정도
- 산식: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6-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정의: 학교에서 학생의 일탈 행동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정도
- 산식: (징계처분 내용이 공개된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6-6-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정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개인 시험성적이 공개된 경험을 한 정도
- 산식: (개인 시험성적이 공개된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7. 정보접근권

2-7-1. 매체에 대한 접근

2-7-1-1. 매체 이용률

- 정의: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대중 매체나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정도

- 산식: 매체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7-1-2. 유해매체 이용률

- 정의: 아동·청소년이 성인용 간행물 및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의 유해매체를 이용한 정도
- 산식: 일반청소년(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위기청소년(특수 시설(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보호된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7-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 정의: 아동·청소년의 독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기반을 나타내는 정도
- 산식: 총 신간 발행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자료원: 대한출판문화협회(2011). 출판통계

2-7-1-4. 어린이도서관 수

- 정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산식: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 자료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총괄표
(<http://www.libsta.go.kr/potal/stat/libStatSummary.do>.)

2-7-1-5.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 정의: 학교 내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비율
- 산식: (도서관 보유학교수/학교수) x 100
- 자료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정의: 학교도서관(실)의 학생 1인당 장서수
- 산식: 장서수/재적 학생수
- 자료원: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2-7-2. 알권리

2-7-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정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학교규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는지에 대한 여부
- 산식: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7-2-2.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 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풀어쓴 아동·청소년용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 산식: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8.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8-1. 체벌

2-8-1-1. 체벌 경험률

- 정의: 최근 1년 동안 부모 및 학교 교사,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
- 산식: (부모,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학교 및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8-2. 정서적 학대

2-8-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 정의: 최근 1년 동안 부모 및 학교 교사,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경험
- 산식: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부모/학교교사/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빈도 수/체벌을 경험한 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부모/학교교사/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8-3. 청소년 폭력

2-8-3-1. 폭력피해 경험

- 정의: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받은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 또는 물건 갈취, 협박,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에 대한 경험
- 산식: (폭력유형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8-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정의: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등)을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 성희롱(놀림), 사생활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 당한 따돌림에 대한 경험
- 산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유형별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수/전체 아동·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다.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지표영역의 개념과 정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의 하위내용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입양(제21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19조, 제39조)로 구성된다. 이 외에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가족의 재결합(제10조),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도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해당하는 조항이지만 이 부분은 지표를 생산하기 보다는 관련법이나 사례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임희진·김현신, 2011:) 본 연구에서는 하위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본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안양육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 등 대안양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아동상해보험료, 전세자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70).

(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5조와 제18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5조에서는 부모나 확대가족, 법정 후견인 등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8조 1항과 2항에서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996년 343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서는 제5조 부모의 지도와 관련하여 사회 내 가족구조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존중받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족상담 서비스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제18조 1, 2항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보호기관, 시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와 법정 후견인이 아동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아동, 빈곤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UN CRC, 1996).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협약 제20조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해 국가가 대체적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희진·김현신, 2011: 100).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없을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서는 대체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실태를 감독하여야 하며, 협약의 일반원칙들(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을 존중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UN CRC, 1996). 본 조항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또는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에게 적용된다(김승권 외, 2009: 538).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2009)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첫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 수치에 대한 원인별 분류(무력분쟁, 가난, 차별에 기인한 유기 등), 둘째, 법원의 판결 결과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 수치, 셋째, 이러한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류된 시설 수,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장소 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비율과 위탁가정 수, 보호조치 기간과 그에 대한 평가의 빈도와 시설이나 위탁부모와 살고 있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 수치와 비율, 보호조치 후에 부모와 재결합 하는 아동의 수치와 비율, 연령별로 분류된 국내와 국가 간 입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아동 수와 함께 해당 아동의 조국과 입양국가와 관련한 정보”(김승권 외, 2009: 543).

(3) 입양(제21조)

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국가가 입양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572). 아동권리 협약은 입양의 바람직함에 대해 중립적이며, 입양이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하나의 가능한 선택임을 언급하고 있다. 개별적인 애착을 위한 아동의 심리적 욕구는 입양의 형식을 제외하고도 충족될 수 있으나 입양을 할 경우에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김승권 외, 2009: 572). 21조에서는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입양은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국제입양이 고려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국제입양되는 아동은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 장치와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서는 국가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들(예를 들면, 국제입양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93년 5월),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 연령, 성별, 아동의 지위, 출신국과 입양국의 아동가족상황, 출신국, 입양국 등을 포함하여 국제입양 관련아동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UN CRC, 1996).

(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제39조)

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485). 구체적으로 아동이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 유기,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 보고,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필요시 사법적 개입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협약 제19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소년원과 같은 공공/사립기관, 양육/보호시설, 가정 내에서 신체적 처벌/고의적인 모욕, 상해/학대/유기/착취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법적인 보장장치들이다. 이외에 아동이 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당국의 개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아동에 대한 훈육, 보호, 대우를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이며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채택된 교육적 조치들과 기타 다른 조치들을 적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이나 복지, 교육, 교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들 및 이와 관련하여 연령, 성별, 가족상황, 지역 등 관련아동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요청된다(UN CRC, 1996). 협약 제39조에는 유기, 착취, 학대받은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협약 제25조는 아동 건강의 관리,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당국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상황 및 치료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위탁가정, 입양가정, 그룹홈, 아동시설 등 가정 외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장애아동, 난민아동, 기숙학교에 거주하는 아동,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 소년원 거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는 양육지정의 적합성과 치료 및 돌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승권 외, 2009: 723). 관련 아동들에 대한 통계로는 유기, 장애, 보호시설과 난민수용소 등의 아동의 연령, 성별, 국적, 인종, 거주지, 가족상황, 양육지정의 지속기간, 심사의 빈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UN CRC, 1996). ‘정기적인 심사’는 관계당국의 양육지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되거나 망각된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하다. 모든 단계에서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편의시설 등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유엔아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대한 이해, 출처확인 필요, 2013 참고자료집I 에 있음).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아동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71)

2) 세부 지표항목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의 지표체계는 <표 6>과 같다.

표 6 **대분류 영역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지표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3.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3-1-1. 보호시설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여성가족부(2013). 2012청소년종합실태조사
			3-1-1-2. 보육시설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통계 e-나라지표, 행정통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 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3-1-1-7.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의 지도관련 지표로 추가	여성가족부(2013). 2012청소년종합실태조사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제20조)	3-2-1. 가출청소년, 소년소녀 가정	3-2-1-1. 가출청소년 비율	경찰청(2013). 경찰백서
			3-2-1-2.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3, 23-1, 23-2 (초등 제외) 초등용: 문 21, 문 21-1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 백서
			3-2-1-4.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3-2-2. 대안적 양육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 보고, e-나라지표.
	3-3. 입양(제21조)	3-3-1. 입양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2013), 2012보 건복지백서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및 제39조)	3-4-1. 학대·방임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보건복지부(2013). 2012보건복지백서
			3-4-1-2. 연령별 아동학대 사 례유형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2013),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4-1-3. 방임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2, 1)~5) 초등용: 문 22, 1)~4)
	3-5.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5-1. 보호기관 심사	3-5-1-1.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

3-1-1. 보호시설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 정의: 평일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청소년의 수
- 산식: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청소년의 수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1-1-2. 보육시설 수

- 정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들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
- 산식: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보육시설의 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 정의: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수
- 산식: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전체 영·유아의 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 정의: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수
- 산식: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시설의 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정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의 수
- 산식: 보육교사 대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
- 자료원: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 정의: 초중고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 중 집에 보호자가 없거나 특별한 활동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수

- 산식: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수
- 자료원: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청소년통계

3-1-1-7. 부모와의 대화시간

- 정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보호자인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정도(5점척도)
- 산식: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보호자인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2-1. 가출청소년·소년소녀가정

3-2-1-1. 가출청소년 비율

- 정의: 연간 가출청소년의 비율
- 산식: $(14-19\text{세 가출 청소년 수} / \text{전체 가출인 수}) \times 100$
- 자료원: 경찰청(2013). 경찰백서

* 전체 가출인수 대비 청소년 가출의 비율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2011조사)

* 전체 청소년수 대비 가출경험 청소년 수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지?(2006년지표)

3-2-1-2.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가출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지표변경 고려)

- 정의: 청소년의 가출경험 및 이유,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산식: 최근 1년 동안 가출경험 및 이유,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정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수
- 산식: 청소년 쉼터 중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의 수 및 이용인원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3-2-1-4. 소년소녀가정 현황

- 정의: 부모의 사망, 질병, 가정결함 등으로 인하여 20세 이하 소년, 소년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청소년 수

- 산식: 국가에 등록된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3-2-2. 대안적 양육

3-2-2-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 정의: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 산식: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아동의 수/전체 요보호아동의 수) $\times$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e-나라지표

3-3. 입양

3-3-1. 입양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 정의: 연간 국내외 입양 아동의 수
- 산식: 국내 및 국외 입양 아동의 수
- 자료원: 보건복지(2013). 2012보건복지백서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지

3-4-1. 학대 · 방임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정의: 정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산식: 전국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정부의 보호를 받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 건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2013). 2012보건복지백서

3-4-1-2.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 정의: 연령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 유형
- 산식: 연령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건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4-1-3. 방임 경험률

- 정의: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경험한 방임의 정도(5점 척도)
- 산식: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의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3-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3-5-1. 보호기관 심사

3-5-1-1. 아동복지시설 평가 및 조사관련 지표 개발 필요

- 정의: 아동복지시설 평가 관련 지표
- 산식:
- 자료원: 보건복지부

라.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지표영역의 개념과 정의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내용은 장애(제23조), 생존 및 발달(제6조2항), 보건서비스(제24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제24조),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방지대책(제33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3항)로 구성된다.

(1) 장애(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협약 제23조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들은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발전을 위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 1항에서는 장애아동이 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장애아동을 사회에 최대한 통합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UN CRC, 2006). 제23조 2항은 국가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아동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원조는 아동의 조건 및 보살피는 사람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3조 3항은 원조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23조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06년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동권리위원회의 제43차 회기에서는 일반논평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과 원조는 가용한 자원 내에서 가능한 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UN CRC, 2006). 이와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관련아동, 제공된 원조범위, 교육, 훈련, 보호, 사회복귀 등 각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고용과 오락, 재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UN CRC, 1996).

(2)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제6조 1항 생명권도 여기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것 같음.

생명권,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

협약 제6조 2항에는 국가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한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은 협약 전체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9: 161). 아동권리협약이행핸드북(2009)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협약의 많은 조항들이 발달의 목표에 속해 있다. 다른 조항들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부모와 가족의 역할 및 아동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또한 생존과 발달권을 최대 보장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김승권 외, 2009: 161).

1996년 343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데에 공헌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 자유로운 사회에서 아동들이 개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사망의 등록, 사망 원인, 사망에 대한 연구와 보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아동 자살 방지와 그 빈도 조사, 모든 연령 아동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들, 각 집단이 특별히 노출되는 위험(성병, 거리 폭력 등)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UN CRC, 1996).

(3) 보건서비스(제24조)

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의 보건관련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제6조의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를 토대로 수립되고 발전된 것이다. 또한 제2조의 무차별 원칙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과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승권 외, 2009: 662). 구체적으로 1항은 국가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항은 국가는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4항은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제24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2010년에 개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RC, 2010)에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임희진 · 김현신, 2011:164). 이 작성지침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5) 청소년의 생식보건권리(용어가 적절한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 필요)

청소년의 생식보건권리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RC, 2010)에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임희진 · 김현신, 2011:186-187).

(6) 약물남용방지대책(제33조)

협약 제33조에는 청소년의 약물남용방지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관련국제조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는 이 항목과 관련하여 적시해야 할 내용으로 일반 국민과 아동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제도와 체계들(학교 구조와 커리큘럼을 포함해서), 상담 등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한 조치와 관련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들, 아동의 약물남용 및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관련된 발생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들, 연령, 성별, 지역, 인종별 각각의 관련 통계, 술, 담배와 기타 아동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약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 및 다른 조치 등이다(UN CRC, 1996).

(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협약 제26조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다루고 있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만, 성인이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는 아동에게 직접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성인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의무를 가진다(김승권 외, 2009: 737). 제26조에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제18조 3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는 위의 권리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규정들,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회보장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들, 혜택을 주기 위해 고려되는 기준들 등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들에는 그러한 조치의 범위와 재정적 관계, 연령/성별/가구당 자녀수/ 부모의 지위/ 한부모 상황 등에 따른 빈도수, 사회보장과 실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제18조 3항과 관련하여서는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UN CRC, 1996).

(정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2005),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는 제 18조 1항, 2항은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제18조 3항은 본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보육관련 지표가 겹치는 현상 발생.)

2) 세부 지표항목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지표체계는 <표 7>과 같다.

표 7

대분류 영역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지표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1. 장애 (제23조)	4-1-1. 장애아동 · 청소년 보호	4-1-1-1. 장애 아동 · 청소년 취학률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2-1-1. 15-19세 출산율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4-2-1-2. 0세의 기대여명	통계청(2013), 생명표
			4-2-1-3. 영아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4-2-1-4. 아동 · 청소년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4-2-1-5. 사고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4-2-1-6. 자살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8.(초등 제외) 문 8-1.(초등 제외)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4-2-1-7. 고민거리 대화 상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9. 초등용: 문 8.
			4-2-1-8. 범죄 피해건수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4-2-1-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50.2) 초등용: 문 41.2)
			4-2-1-1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50.1) 초등용: 문 41.1)
	4-3. 보건서비스 (제24조)	4-3-1. 건강관리 조치	4-3-1-1.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4-3-1-3. 학교급식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중등용: 문 4. 초등용: 문 4.
			4-3-1-4.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4-4-1. 건강 평가 및 관심도	4-4-1-1. 주관적 건강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6. 초등용: 문 6.
		4-4-2. 신체적 건강	4-4-2-1. 운동실천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5. 초등용: 문 5.
			4-4-2-2. 아침식사 결식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 문 3-1. 초등용: 문 3. 문 3-1.
			4-4-2-3. 수면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 문 2. 문 2-1. 초등용: 문 1. 문 2. 문 2-1.
			4-4-2-4. 비만율	보건사회연구원(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4-4-2-5. 청소년 유병률	보건사회연구원(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4-4-3. 정서적 안정	4-4-3-1. 우울증 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0. 1)~3) 초등용: 문 9. 1)~3)
			4-4-3-2. 스트레스 인지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7.1)~6) 초등용: 문 7.1)~6)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4-3-3. 자아존중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중등용: 문 10.4)~7) 초등용: 문 9.4)~7)
			4-4-3-4. 행복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1. 문 11-1. 초등용: 문 10. 문 10-1.
	4-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4-5-0-1. 성교육 경험률	
	4-6.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4-6-1. 예방교육	4-6-1-1.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4-6-2. 음주 · 흡연	4-6-2-1. 흡연율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6-2-2. 음주율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7.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7-1-1. 빈곤율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2012).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4-7-2-1.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4-7-2-2.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4-1. 장애

4-1-1. 장애아동 · 청소년 보호

4-1-1-1. 장애아동 · 청소년 취학률

- 정의: 취학 적령 장애아 중 특수학교 재학 및 통합교육 수혜학생 비율

- 산식: (과정별 장애청소년의 취학생 수/과정별 적령 장애아 수) × 100
- 자료원: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 정의: 각급학교 졸업생수 대비, 직종별, 성별 장애청소년의 취업률
- 산식: (장애청소년의 취업자 수/장애청소년 졸업생 수) × 100
- 자료원: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2. 생존 및 발달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2-1-1. 15-19세 출산율

- 정의: 가임연령층(15~49세)의 여성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해당연령층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응용하여 ‘15~19세 여성 청소년’에 한정시킨 출산율
- 산식: (출생아수/15~19세 여성 인구수) × 1,000
- 자료원: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4-2-1-2. 0세의 기대여명

- 정의: 만 1세미만의 영아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 연수
- 자료원: 통계청(2013). 생명표

4-2-1-3. 영아 사망률(성별)

- 정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 산식: (사망자수/ 해당 인구수) × 1,000
- 자료원: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영아는 0세, 아동청소년은 1세~24세? 아동청소년 사망률에서 0~24세를 다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영아 사망률을 별도의 지표로 넣어야하는지 고민

4-2-1-4. 아동청소년 사망률(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 산식: (사망자수/ 해당 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4-2-1-5. 사고사망률

- 정의: 해당인구 100,000명당 사고로 사망한 수
- 산식: (사망자수/ 해당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4-2-1-6. 자살률

- 정의: 해당인구 100,000명당 자살로 사망한 수 및 청소년의 자살생각 정도와 이유
- 산식: (사망자수/ 해당 인구수) $\times$ 1,000, 자살생각 정도와 이유(5개 항목)
- 자료원: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2-1-7. 고민거리 대화상대

- 정의: 자신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상대 존재여부와 대상
- 산식: 자신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누구인지 조사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2-1-8. 범죄 피해건수

- 정의: 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만 13에서 만 20세)
- 산식: (범죄 피해 수/ 해당 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4-2-1-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정의: 청소년이 느끼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
(4점 척도)
- 산식: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2-1-1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 정의: 청소년이 느끼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 (4점 척도)
- 산식: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3. 보건서비스

4-3-1. 건강관리 조치

4-3-1-1.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 정의: 학교에서 질환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정도
- 산식: 질환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식과 수준
- 자료원: 교육부 행정통계 추가 발굴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 정의: 0-24세의 의료급여대상자의 연령별 비율
- 산식: $(\text{연령별 의료급여대상자} / \text{0-24세의 의료급여대상자}) \times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4-3-1-3. 학교급식 만족도

- 정의: 청소년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4점 척도)
- 산식: 학교급식의 영양, 맛과 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3-1-4.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 변경(학교급식 안전 현황)

- 정의: 학교급식 사고 통계
- 산식: 학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한 객관적 현황
- 자료원: 교육부 등의 통계자료 추가 발굴 필요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4-4-1. 건강 평가 및 관심도

4-4-1-1. 주관적 건강평가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건강평가 수준(4점 척도)
- 산식: 주관적인 신체적 건강평가 수준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2. 신체적 건강

4-4-2-1. 운동실천율

- 정의: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지와 그 정도(4점 척도)
- 산식: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는 정도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2-2. 아침식사 결식율

- 정의: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정도(4점 척도)와 결식이유
- 산식: 학교 가기 전 아침식사를 하는 정도와 하지 않는 이유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2-3. 수면시간

- 정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 및 잠이 부족한 이유
- 산식: 하루 평균 수면시간 측정 및 이유(8항목)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2-4. 비만율

- 정의: 청소년 신체질량지수(BMI) 상 비만율(18.5~24.9 정상, 25.0~29.9 과체중, 30.0~34.9 경도비만, 35.0 이상 고도비만)

- 산식: 체중(Kg)/신장(m)²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2013). 교육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 비만을 뿐만 아니라 저체중율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외에 미숙아?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2010 14-15페이지에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low birth weight,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moderate and severe underweight, wasting and stunting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음)

4-4-2-5. 청소년 유병율

- 정의: 조사대상 인구 중 대상기간동안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 산식: (기간내(2주간) 유병자수 / 대상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4-4-3. 정서적 안정

4-4-3-1. 우울증 지수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울 정도(4점 척도)
- 산식: 청소년의 우울증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3문항)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3-2. 스트레스 인지율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인식 정도(4점 척도)
- 산식: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3-3. 자아존중감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아존중감 정도(4점 척도)
- 산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4문항)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4-3-4. 행복도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정도(4점 척도)
- 산식: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수준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5. 청소년의 생식보건권리

4-5-0-1. 성교육 경험률

- 정의: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 정도
- 산식:
- 자료원: 지표 발굴 필요

4-6. 약물남용방지대책

4-6-1. 예방교육

4-6-1-1.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 정의: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 정도
- 산식:
- 자료원: 지표 발굴 필요

4-6-2. 음주흡연

4-6-2-1. 흡연율

- 정의: 대상청소년 중 흡연을 한 비율과 그 정도
- 산식: $(\text{흡연자수} / \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6-2-2. 음주율

- 정의: 대상청소년 중 음주를 한 비율과 그 정도
- 산식: $(\text{음주자수} / \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7-1-1. 빈곤율

- 정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산식: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 계층의 수/ 대상 인구수(0-18세)) × 100
- 자료원: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부(2012).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정의: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청소년 비율
- 산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청소년 수/ 해당인구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2013). 201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4-7-2-1.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지표 항목에서 제외)

* 설문 분석을 위한 배경문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설문문항에서 제외됨으로써 4-7-1-2로 파악 가능

4-7-2-2.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지표항목 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현황)

- 정의: 청소년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사회보장서비스 현황
- 산식: 학비, 급식비, 의료비, 물품, 현금 지원 정도
- 자료원: 복지부, 교육부 등 통계 발굴

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표 8 대분류 영역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지표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5-1-1. 인지발달 기회	5-1-1-1. 취학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행정통계
			5-1-1-2. 진학률	한국교육개발원(2011). 행정통계
			5-1-1-3. 학업중단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4. 문 14-1. 초등용: 문 13. 문 13-1. 문 15.(초등 제외)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행정통계
			5-1-1-4. 학교부적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6, 문 17. 초등용: 문 14. 문 15.
			5-1-1-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행정통계
			5-1-1-6.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청(2011). 행정통계
			5-1-1-7. 사교육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2. 초등용: 문 11.
			5-1-1-8. 하루 평균 학습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3. 초등용: 문 12.
		5-1-2. 진로준비 기회	5-1-2-1. 학교상담교사 배치율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행정통계 관련 행정통계 검토 요
		5-1-3. 학교규율의 인간의	5-1-3-1. 교육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인식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5-2. 교육의 목적 (제29조)	준엄성 보장	5-1-3-2. 학교 규율의 아동· 청소년 준엄성 일치 조치	
		5-2-1. 아동 · 청소년 준엄성 존중	5-2-1-1.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국교육개발원. 행정통계
			5-2-1-2. 학습부진아 출현율	교육과학기술부. 행정통계
			5-2-1-3. 재능의 계발	
			5-2-1-4.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국가인권위원회(2011).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5-2-1-5.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비 교육	
			5-2-1-6.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정도	
		5-2-2. 학교의 의미	5-2-2-1.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주관적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9. 초등용: 문 17.
	5-3. 인권교육 및 시민교육	5-3-1. 인권교육	5-3-1-1. 인권교육 실시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0.1)~3) 문 20-1.1)~3) 문 20-2 (초등 제외 문 20.3) 문 20-1.3)) 초등용: 문 18. 문 18-1. 문 18-2.
	5-4.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5-4-1. 문화여가 활동	5-4-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2011). 행정통계
			5-4-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7. 문 27-1. 초등용: 문 25. 문 25-1.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5-4-1-3.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8. 초등용: 문 2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 생산 방법
			5-4-1-4.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4-1-5.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9. 초등용: 문 27.
			5-4-1-6. 휴일을 보내는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0. 초등용: 문 28.
			5-4-1-7. 여가활동 만족도	통계청(2011). 행정통계
		5-4-2. 아동·청소년 활동	5-4-2-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1. 초등용: 문 29.
			5-4-2-2. 동아리 활동 참가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2. 초등용: 문 30.
			5-4-2-3.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3. 초등용: 문 31.
		5-4-3. 소수집단 문화적 권리	5-4-3-1.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존중도	관련 행정통계 검토 요

마. 특별보호조치

(제22조, 제30조, 제32-36조, 제37조 (b)-(d),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1) 지표 영역의 개념과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권리 침해에 특별히 취약한 일부 아동집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조치를 취해져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별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긴급사태 하에

있는 아동(난민아동, 무력분쟁하의 아동), 법에 저촉된 아동(소년사법시스템 상에 있는 아동, 자유를 빼앗긴 아동), 착취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기타 형태의 착취, 인신매매 및 유괴),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그룹에 속한 아동, 거리에서 생활하는 있는 아동 등이 포함된다(UN CRC, 2005). 국가 당사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기타 유엔 문서에 명시된 대로 취약 아동들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난민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는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이미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아동뿐만 아니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난민 신청 중인 아동까지를 포함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장복희 역, 1997: 1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1,000만 명의 난민 중 약 절반이 아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NICEF, 2007: 3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현재 난민신청자 5,382명 중 인정자가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가 173명이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난민아동은 2012년 12월말 현재 17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우리나라 제3·4차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난민은 정부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대한민국정부, 2008:134), 정부에서는 난민자격 인정자에게 취업활동의 자유와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난민아동들에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이브칠드런에서 의뢰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난민아동의 절반 정도가 무국적자로, 학교 입학이나 병원 이용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외, 2013).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2008년에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난민관련 정책담당 부서 기능의 강화, 심사 전문 직원 배치, 난민인정 결정 권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35).

(2) 무력분쟁하의 아동(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포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들이 국제 인도법의 규칙을 준수하여 15세 미만의 아동의 징병이나 무력분쟁에의 가담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 제38조에서는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아동의 징병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제39조에서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히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격과 적대행위에 참가시키는 행위,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이나 소집행위 등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력분쟁과 외국점령 기간 중에 아동의 보호와 신체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있는 장소를 포함해 국제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과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징집이나 소집행위, 국내·외적인 무력분쟁 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무력분쟁의 각 당사자가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무력분쟁 및 외국점령 기간 중에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폭적인 존중과 적용가능한 인권조약 준수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상태가 아동 보호에 필요하며, 무력분쟁에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2. 2. 1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18세 미만 아동의 전쟁 참여와 무장단체 가입 등은 「병역법」, 「형법」 등 관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전투원으로 무력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35).

(3) 소년사법의 운영

소년사법은 일반 사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범죄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나, 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 형벌 이외에 다른 처리절차를 가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소년사법은 본래적 의미에서는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작용을 말하나, 근대적 의미에서는 범죄소년을 비롯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내용이 다른 독특한 제재수단과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의 처리절차를 마련한 데에 그 고유성이 있다”(최병각, 2007: 20).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처음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포함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따라서 소년사법의 대상은 법에 저촉되어 경찰에 체포된 18세 미만의 아동,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 또는 집행유예의 형 및 자유의 박탈 이외의 처벌을 받은 18세 미만의 아동, 특별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제40조 3항에 의하면 “이들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과 종합적인 소년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최병각, 2007: 24).

우리나라에서 소년사법 운영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개정하여 처벌보다는 예방과 선도 중심의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2004년 「소년원법」을 개정하였고, 2007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호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135-136).

(4) 자유를 빼앗긴 아동(어떤 형태의 구금, 수감 및 수용환경에의 조치를 포함)

자유를 빼앗긴 아동은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동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에서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정의와 자유의 박탈이 행해지는 시기와 방법 및 원칙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자유의 박탈이란 사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 공권력에 의해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공·사적 보호소에 구금하거나 체포 또는 억류하는 것을 의미한다(rule 11b).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의 일반원칙인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 이익 원칙, 아동 견해 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UN CRC, 1996).

특별히 아동에 대한 자유의 박탈은 오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 등 아동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종신형 등을 금하고 있으며, 어떠한 아동도 성인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과의 접촉에 대한 권리를 갖으며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접근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또한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의 제한은 최대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 형사사건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특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을 처우할 때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40).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원에서 소년원장은 자유가 제한된 아동들의 면회나 서신교환에 대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41).

(5)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위험한 노동, 교육에 방해되는 노동,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으로부터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연령, 고용조건,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명시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

또한 이를 위해 각국 당사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률의 정비, 정보의 제공, 교육훈련 및 캠페인, 조정감시체계 등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99년 1월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제138호)」과 2001년 3월에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을 비준하여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연소자 보호의 별도의 장을 두어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주, 교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43-144).

(6)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서는 아동이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행위자를 확실하게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24).

“아동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와 거래를 의미하며, 아동매춘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 관련 활동에 이용함을 의미하며, 아동포르노그래피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 성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2. 1. 18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한국 정부에서는 아동을 성적착취 및 성착취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응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범인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소아기호증,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08: 145), 최근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설치와 16세 미만 대상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 배제를 추진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2) 세부 지표항목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지표체계는 <표 9>와 같다.

표 9 **대분류 영역 6. 특별보호조치 : 지표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생산 방법
6. 특별 보호 조치	6-1. 난민아동 (제22조)	6-1-1. 난민아동	6-1-1-1. 연도별 난민 현황	법무부(2013).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6-1-1-2.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6-1-1-3.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교육과학기술부(2012). 탈북 학생 재학현황 통계
	6-2. 무력분쟁하 의 아동 (제38조),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제39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생산 방법
	6-3. 착취 상황하의 아동(제32조, 제34조, 제39조)	6-3-1. 경제적 착취	6-3-1-1.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6-3-1-2.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6-3-1-3.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8, 문 48-1. (초등제외)
		6-3-2. 성적 착취	6-3-2-1. 청소년성매매 연간 발생 현황	경찰청(2010.7). 행정통계
			6-3-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중 중등용: 문 49. 문 49-1. 문 49-2. 초등용: 문 40. 문 40-1. 문 40-2.
			6-3-2-3.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3-2-4.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현황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3-2-5.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경로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4.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6-5. 법에 저촉된 아동	6-5-1. 소년사법	6-5-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현황	대검찰청(2012). 경찰연감
			6-5-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대검찰청(2012). 경찰연감
			6-5-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대검찰청(2012). 경찰연감
			6-5-1-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대검찰청(2012). 경찰연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지표생산 방법		
			6-5-1-5.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6.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 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9.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법원행정처(2012). 사법연감		
			6-5-1-10. 보호소년 수용현황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 구속, 수감 등 자유 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6-5-2-1. 소년범죄 처리 현황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2. 소년범죄자 구성비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3.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4.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5. 소년범죄 성별 현황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6.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7.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8.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9.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10.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6-6. 소수 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6-1. 난민아동

6-1-1. 난민 아동

6-1-1-1. 연도별 난민 현황

-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 불인정 및 철회된 사람의 수
- 산식: 연도별 난민 신청 · 인정 · 인도적 체류 · 불인정 · 철회자 수
- 자료원: 법무부(2013).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1-1-2.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정의: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의 연도별 입국 현황
- 산식: 연도별 북한이탈청소년 입국 인원 수
- 자료원: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www.unikorea.go.kr)

6-1-1-3.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 정의: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의 초 · 중 · 고 및 대안교육시설 재학현황
- 산식: 북한이탈청소년의 재학 인원 수
- 자료원: 교육과학기술부(2012). 탈북학생 재학현황 통계

6-2. 무력분쟁하의 아동, 신체적 ·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6-3. 착취하의 아동

6-3-1. 경제적 착취

6-3-1-1.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정의: 연도별 근로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산식: $(\Sigma \text{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 / \text{전체근로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6-3-1-2.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의: 19세 이하 및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연도별 임금수준 및 증감률
- 산식: (익년도 청소년근로자 임금-기준년도 청소년근로자 임금/기준년도 청소년근로자 임금) x 100
- 자료원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6-3-1-3.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정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임금체불, 최저임금지급 불이행, 부당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 해고 경험률
- 산식: (아르바이트시 부당 처우를 경험한 청소년 수/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6-3-2. 성적 착취

6-3-2-1. 청소년성매매 연간 발생 현황

- 정의: 성매매 대상 청소년 현황
- 산식: 청소년성매매로 검거된 대상 청소년의 수
- 자료원: 경찰청(2012).

6-3-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 정의: 청소년의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경험
- 산식: (성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6-3-2-3.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정의: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수사·법적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산식: 연도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 수 및 비율
(내용별 지원 건 수/전체 지원 건 수) x 100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3-2-4.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현황

- 정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현황
- 산식: 연도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자 수 및 비율
(연령별 보호시설 입소자 수/전체 보호시설 입소자 수) x 100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3-2-5.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경로

- 정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로
- 산식: 입소경로별 입소자수 및 비율
(입소경로별 보호시설 입소자 수/전체 보호시설 입소자 수) x 100
- 자료원: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4.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6-5. 법에 저촉된 아동

6-5-1. 소년사법

6-5-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현황

- 정의: 소년범죄자 중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의 현황
- 산식: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인원 수
- 자료원: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6-5-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 정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의 죄명별 현황
- 산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인원 수
- 자료원: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6-5-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 정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의 연령별 현황

- 산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인원 수
- 자료원: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6-5-1-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정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선도위탁 현황
- 산식: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인원 수
- 자료원: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6-5-1-5.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정의: 청소년범죄자 중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처분한 청소년의 현황
- 산식: $(\text{소년보호관찰인원} / \text{전체보호관찰인원}) \times 100$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6.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 정의: 청소년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 산식: 보호관찰자 중 성적 양호 및 성적 불량 결과에 따라 조치된 인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정의: 유죄가 인정된 청소년대상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를 하도록 명령한 집행현황
- 산식: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정의: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청소년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한 집행현황
- 산식: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6-5-1-9.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 정의: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사송치, 타법원이송 등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인원 수 및 비율
$$(\text{소년보호사건 처리 유형별 대상 청소년 수} / \text{전체 소년보호사건 처리 대상 수}) \times 100$$
- 자료원: 법원행정처(2012). 사법연감

6-5-1-10. 보호소년 수용현황

- 정의: 보호소년의 수용현황
- 산식: 연도별 보호소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수용인원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6-5-2-1. 소년범죄 처리 현황

- 정의: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 현황
- 산식 : 연도별 소년범죄자 수 및 비율
$$(\text{처리 유형별 소년범죄자 수} / \text{전체 범죄 처리 소년범죄자 수}) \times 100$$
- 자료원: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2. 소년범죄자 구성비

- 정의: 전체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 비율
- 산식: $(\text{소년범죄자 수} / \text{총 범죄자 수}) \times 100$
- 자료원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3.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 정의: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의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등 유형별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범죄의 유형별 인원 수
- 자료원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4.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 정의: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의 연령별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범죄의 연령별 인원 수 및 비율
(연령별 소년범죄자 수/전체 소년범죄자 수) x 100
- 자료원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5. 소년범죄 성별 현황

- 정의: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의 성별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범죄의 성별 인원 수 및 비율
(성별 소년범죄자 수/전체 소년범죄자 수) x 100
- 자료원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6-5-2-6.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정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산식: 죄명별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 인원 수 및 비율
(범죄 유형별 소년교도소 수용인원 수/전체 소년교도소 수용인원 수) x 100
- 자료원: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6-5-2-7.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 정의: 소년원생의 영어, 컴퓨터, 일반기능, 기타 등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원 학생의 자격증 취득 인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8.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 정의: 소년원학생의 취업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원학생 취업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9.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 정의: 소년원학생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원학생의 진학 인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6-5-2-10.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 정의: 소년원생의 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졸업인원) 등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 산식: 연도별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이수 인원 수
- 자료원: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6-6.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

참고문헌

- 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근, 이용교, 이재연 외 공역 (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대한민국정부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박재민 (2010). 법무부 세미나 토론문. **제3회 난민 인권 워크숍 자료집: 난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 현황과 과제**, 1-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https://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10&strAnsNo=A&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 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안전행정부 (2013.5.30). 국민안전 종합대책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3775&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tPage=11> 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연합뉴스 (2013.5.30). 4대아 관련 국민안전종합대책 주요내용.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5/30/0301000000AKR20130530119100004.HTML?template=5565> 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연도미상). **아동의 권리조약 해설**. 미간행자료.
- 인권운동사랑방 (연도미상).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한 이해**. 미간행자료.
-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연구보고 12-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병각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1).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v. 3rd ed.). Genev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Ⅰ

지 정 토 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 workshop 토론문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주기적·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진보 수준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의 개발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토론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본 토론문에서는 사회지표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관련 자료의 단순한 나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추가적 고민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한다. 둘째, 본 토론문에서는 최근 하나의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지수개발의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의 지수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전에 볼 때, 인권은 국적, 종교, 성별, 신체적 조건, 사상, 그리고 신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복리(well-being)를 추구한다.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개개인이 근본적인 도덕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며,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며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가는 주체로서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권의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배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며, 또한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Freeman 1994:502-508)¹⁾. 아동·청소년인권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

1) 물론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를 현실세계에서 실천하는 실천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인간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고 또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권'의 정의와 의미가 위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생애주기로서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특수성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권의 역사는 바로 인간 이성(human reason)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는 범위와 속도에 조응하면서 인권이 발전하였다. 근대 이후 인간 이성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신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가치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제도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 발전의 역사를 보면, 자유라는 가치가 먼저 발전하고 정착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대까지 발전하는 역사적 궤적을 보인다. 즉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인권의 개념은 시민·정치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기초한 자유권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권리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권의 보편적 발전경로를 고려할 때 오늘날 인권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통일적으로 인권의 규범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가하는 점이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고민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생산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인권연구로서 좀 더 이론적 및 실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또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이 지표체계 속에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발전 단계에서 아동과 청소년 집단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은 현 지표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 역시 이것이 무리한 요구임을 알고 있다.

두 번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지점은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활용방안으로서 아동·청소년인권지수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연구 결과물의 정책적 실효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표관련 연구, 그 가운데서 특히 종합적 지표체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관련 통계의 단순 나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들을 하나의 보고서에 종합하여 연차적으로 살펴보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과연 전체적인 종합지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제시된 자료에 대한 독자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만약 그 독자가 실제 정책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정책적 개입의 지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수는 단일한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개별지수와 다수의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종합지수로 나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는 일종의 다수의 통계계열로 이루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생산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지수(가칭)은 종합지수의 성격을 갖는다.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 및 방법론적 고려들이 필요하다. 먼저 가중치의 문제이다. 종합지수는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별 지표들을 동등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지수(또는 **Equal Weighting Strategy Index**)와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지수로 구분된다. 또 하나의 고려 지점은 지수화 단위이다. 애초에 연구자들과나 행정엘리트들이 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비교’에 있기 때문에 비교의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지수 또는 지표 개발 이전에 선행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비교가 목적인가? 아니면 국내 특정 지역들 간 비교인가? 아니면 개인 간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등을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지수개발을 위한 다음 이슈는 세부지표의 양(**Quantity**)이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지표를 통한 종합지수개발은 지나치게 많지 않은 지표의 수를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현상의 측정을 위한 내용타당도나 구성타당도 등을 고려하자면 현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관찰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만약 지표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첫째, 개별 지표가 최종 지수 값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Sensitiv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종합지수의 구축과정 이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최종 지수의 정책적 활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지수개발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외적 환경과 내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최종 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시계열 국가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권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실제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권리를 느끼고 있는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지표들만으로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권지수를 생산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의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UN이나 WHO등의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각국 성인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 관련 조사들이 그 나라의 경제, 의료, 복지 수준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관적 지표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²⁾.

2) 2004년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푸에르토리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지표의 산출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과정은 측정 속성의 검증까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조사를 통해 측정속성을 검증하고 기 개발된 척도들을 수정 및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되고 다른 조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정 수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등과 같은 공인기관에 의해 생산된 조사도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표개발을 통한 지수화 작업은 일정한 사회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수치의 제시를 통해 현상에 대한 가시적·축약적 이해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증분석과 이론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학술연구의 진흥은 물론이요, 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은 앞 다투어 지표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정책지향적 연구가 학문적 철저함을 갖지 못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의 생산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Freeman, M. (1994).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 491-514.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NY: Doubleday.
- Marshall, T. H., & Bottomore, T.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2013년 인권지표체계에서는 2011~12년 인권지표체계에 ‘일반조치 및 일반원칙’을 더하여 대분류 영역을 5개에서 6개로 늘리고 지표체계구성도 ‘영역-하위영역-지표-자료’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지표생산방법’으로 상세화 하고, 2개영역씩 격년 조사하던 것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수정 · 보완하였다. 이런 수정 · 보완의 큰 틀에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의 판단 준거 설정에 대해

지금의 인권지표체계를 통한 조사결과는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를 잘 드러내리라고 예상되지만, 그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조사된 인권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준이 판단되어야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준거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표항목의 종합성과 적합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지표항목은 주로 성과지표, 판단중심의 주관적 지표로 되어 있어, 한 지표항목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의 책무 이행과 기본적인 제도의 구비, 이 책무와 제도에 따른 정책수단 정도, 기본제도와 정책수단에 따른 실제적인 성과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소분류를 파악하는 지표를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로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청소년의 판단과 인식을 근거(judgement-based)로 인권지표를 파악하고 있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와 유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현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어, 사실중심(fact-based)의 객관적인 지표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조지표-과정지표-성과지표, 사실중심지표-판단중심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문제는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 수반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연구와 준비를 통해 인권지표체계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갔으면 한다.

지표항목의 설명방식에 대해

지표항목에 대해 정의, 산식, 자료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의 지표설명방식 중 일부를 차용하여 정의와 산식에 대한 ‘정당화와 한계’ 항목을 정의, 산식 다음에 추가했으면 한다. 지표항목의 정의와 산식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정의와 산식, 자료원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지표항목의 세부적인 조정과 보완에 대해

1-1. 인권일반

1-1-1. 인권인프라

1-1-1-1. 아동 청소년 인권기구(센터, 모니터링 등), 전담공무원 수를 추가

1-1-1-2. 이동 청소년 인권기구 종사자 수 추가

기존의 1-1-1-1. 지표항목은 1-1-2. 인권의식으로 이동

1-1-2, 1-1-3의 소분류를 통합하여 인권의식과 수준으로

1-2. 일반원칙

1-2-2. 아동 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를 추가하고

1-2-2-1. 아동 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에 대한 인식

1-2-2-2.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예산 비율

2-2. 신분의 등록 및 유지

2-2-1. 중도입국청소년을 추가하고

2-2-1-1. 중도입국청소년의 성명, 국적 보장

2-7. 정보접근권

2-7-1-2. 유해매체이용률을 4-2. 생존 및 발달 영역의 4-2-1-9로 이동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

3-1-1. 보호시설의 명칭을 양육환경(시설)으로 수정

3-1-2. 부모와의 관계를 신설하고 3-1-1-7.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이 영역으로 이동

3-4. 아동학대

3-4-2. 회복과 사회복귀를 추가하고

3-4-2-1. 학대 방임 아동의 상담 치유 건수

3-4-2-2. 학대 방임 아동의 사회복귀 지원 건수

3-5. 양육 및 보호조치....

3-5-1. 보호기관 심사

3-5-1-1. 관리, 치료, 보호목적으로 양육지정된 아동건수를 추가

3-5-1-2. 양육지정된 시설에 대한 평가 비율을 추가

4-2.의 4-2-1-1. 15~19세 출산율을 4-5. 청소년의 생식보건권리로 이동

4-6. 약물남용방지

4-6-2. 음주, 흡연을 음주, 흡연, 약물로 하고 4-6-2-3. 약물복용률 추가

5-1. 교육에의 권리

5-1-1. 인지발달기회를 교육의 기회균등으로 수정

5-1-2. 중 5-1-2-2 직업 진로교육 경험률 추가

5-1-4. 교육의 국제협력을 추가하고 5-1-4-1. 개도국교육지원액을 추가

5-2. 교육의 목적

5-2-1. 아동.....

5-2-1-1. 5-2-1-2. 5-2-1-4.를 5-1-1. 영역으로 이동하고 5-2-1-5를 삭제,

인격 도덕성교육 정도, 관용 평화교육 정도, 국제이해 다문화교육 정도를 추가

5-3. 인권교육 및 시민교육

5-3-2. 시민교육을 추가하고

5-3-2-1.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교육을 받은 정도

6-5. 법에 저촉된 아동

6-5-1-2. 6-5-1-3. 6-5-1-7. 6-5-1-8. 삭제

6-5-2-3. 6-5-2-4. 6-5-2-5. 삭제

6-6. 소수민족....

6-6-1. 중도입국청소년 등 문화 정체성 유지를 추가하고

6-6-1-1. 중도입국청소년 문화 정체성 유지 정도

6-6-1-2. 북한이탈청소년 문화 정체성 유지 정도

지표의 산식에 대해

2-3-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의 산식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 전달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을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참여보장학교수/전체학교수) x 100으로 수정

2-3-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의 산식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x 100’을 19~24세 청소년의 투표율로 수정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워크숍 토론문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교수)

인권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동 ·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을 적절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인권관련 지표 체계 개발 및 항목선정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이론적 배경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더불어 인권지표 개발의 중요한 준거틀로 볼 수 있는 UN의 인권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및 항목을 선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표의 타당성 및 효용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표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사회지표의 경우에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UN이나 OECD 등에서 제안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N의 인권지표 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8개의 영역체계를 바탕으로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체계의 대영역(대분류)을 설정하고 그 아래 중분류와 소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표 항목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표체계는 향후 국제사회와의 비교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의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당초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의 객관적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온 반면, 미국에서는 객관적인 상태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나 태도 등을 사회지표로 선정하는 흐름도 있어 왔다. 특정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가운데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는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지표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이 주관적 지표일수도 객관적 지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지표항목들을 살펴보면,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의 수가 상당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지표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표 자료의 산출을 위해 수행되는 설문조사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표본의 대표성 정도는 지표 값의 타당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주관적 지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지표가 갖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해당 현상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은 해당 현상에 대한 benchmark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 현상의 수준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이나 학교 등의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지표가 benchmark로서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권지표체계가 소위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성과(outcome)의 맥락에서 각각의 단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이나 인력과 같은 투입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사업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참여 인원과 같은 산출과 더불어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최종의 관심은 성과의 정도에 놓이게 되지만, 많은 경우 투입 정도와 성과 정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설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투입이나 산출 정도에 초점을 두어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지표가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기본적으로 UN의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하여 작성하더라도 각 대분류나 중분류 체계 하에서 투입-과정-산출-성과의 관점에서 지표를 분류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지표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시계열 비교 및 국제비교

가능성의 확보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나타내는 방법은 시간의 경과를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회의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계열 비교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처음 지표 항목을 선정하고 산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수정 필요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는 UN이나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관련 지표에 대한 검토 및 자료 수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 항목과 산식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기저에는 현존하는 *being*으로서의 존재라기보다는 미래에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becoming*의 존재이며, 따라서 *becoming*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인권마저도 무시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발은 그들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일 것이다.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지표 개선방향

임 성 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배 경]

현재 한국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고, 이를 보다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다른 계층에 비해 청소년 인권의 신장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토론자는 청소년 인권지표에는 다른 계층의 보편적 인권지표에 비해 특수하게 고려하여야 할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 계층이 인권의 최대 취약층이라는 점과 학교와 가정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청소년의 인권’에 더하여 ‘한국’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즉, ‘한국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인권지표의 특성화를 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권지표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의 인권이 향상되는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진방향으로서 보편적 인권지표 혹은 유엔이 설정한 핵심 인권지표를 포함하되 한국적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실히 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인권의 필요성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상황을 만들자는데 있다면, 각 사회와 문화마다 강조되어야 할 인권 항목과 지표들이 특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규정되는 인권도 가능하겠지만, 국제적 표준만을 따를 경우 특정지역과 국가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권항목들이 배제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강제된 과잉 학습 탈피권’이 인권지표의 방향이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지표체계는 청소년의 인권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특수성이 미흡해 보인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생활공간을 사회, 학교, 가정으로 구분하면, 이중 가장 취약한 인권사각지대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사회는 비교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관찰가능하며, 위반 시 제제가 가능하여 개인의 인권이 소극적이거나 보장될 수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그나마 학교는 관찰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의 교육정책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학생인권의 형식적인 보호 장치는 마련되었다. 학교는 적어도 인권실험 중에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가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발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여기지기 보다는 ‘부모의 자식’ 관계의 한 요소로 여겨져, 보편적인 인권의 조건들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도 관찰되기 어렵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관계가 어떠한 관계보다도 우선시 되며, 청소년 개인의 권리(인권)를 초월하여 규정되는 것이어서 청소년 인권의 사각 지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인권침해 사례가 관찰되어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기 마련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정은 인권의 블랙박스이다. 예컨대, 학교에서의 종교의 중립은 그 관찰과 제제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에 의한 자녀의 종교의 자유는 관찰되어도 제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에 억압되어 학습의 자기결정권과 기본적인 생존권도 위협받지만, 부모를 대신해서 이를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는 타자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현재의 청소년인권지표안의 경우에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들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청소년 인권지표의 특징과 고려사항]

1. 청소년 인권지표의 특징

- 지표수가 너무 많다는 인상: 현재의 지표들 중에는 인권의 조건보다는 결과에 치중된 지표들이 많다는 인상이 든다. 예컨대, 비만율,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행복도 등은 인권의 조건을 반영한 지표이기 보다는 인권 보장의 결과에 해당되는 지표들로 보인다. 현재의 지표체계가 인권의 조건을 점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의 보장 결과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자는 인권의 조건으로 인권지표를 제한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지표체계에서도 일차원적인 영역분류가 아닌 다차원적 분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너무 포괄적이라는 인상: 현재 구상되고 있는 지표는 보기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조사로 볼 수도 있다. 인권에 더 초점을 두고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흡연율과 음주율은 청소년의 삶과 건강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인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만일 인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북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남한보다 낮다면,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좋은가? 현재의 인권지표수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청소년들의 인권문제가 반영된 지표를 추가보완 할 필요가 있다.
- 지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예컨대, 사교육시간이 많으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표의 방향이 설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사교육이라도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이 있고, 타인(부모)결정권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권에 해당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반 인권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대화시간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대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학교교육이나 사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이 계량적 차원에서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교육의 양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그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5-1-1-6, 7, 8.의 경우에 사교육시간이나 학습시간의 경우 역시 사교육과 학습시간의 양보다는 그것의 동기와 결정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지표는 방향성 명시가 필수적이다.
- 한국청소년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 추가 발굴 필요: 세계의 청소년들은 유엔의 인권지표를 충족하면서도 각 지역이나 국가별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존권이 중요하겠지만, 남한의 청소년들은 입시로 시달려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심히 위축된다고 할 때,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노동착취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모든 삶이 공부와 관련되어 매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에 의한 ‘공부 착취’ 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다.
- 지표의 구체성 제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표는 매우 구체적인 반면, 어떤 지표는 매우 추상적(예, ..에 대한 인지도, ...에 대한 인식 등은

다소 추상적임)이어서 서로 균형이 잘 맞지 않다.

- 청소년의 발달적 지위를 과도하게 고려한 지표라는 인상: 청소년 인권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발달적 지위를 고려한 청소년인권제한 논리이다. 즉, 미성년자라는 지위 때문에 다소간에 인권이 제한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논리는 특히 한국에서 공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계층, 발달적 지위, 인종 등 모든 것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전제할 때, 인권지표 개발 시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지위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지표에는 이러한 논리가 반영되어 청소년 지표 자체가 인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청소년에 국한된 시설 수와 참여도를 측정하고 있어 인권적 목표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정책적 목표와 인권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성숙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한 사람의 온전한(성숙한) 인간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은 그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몇몇 개발지표는 대부분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미성숙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예컨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으면 학생들의 인권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관점은 그들을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개인이 아닌 아직 부모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시간보다는 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대화하는 주체들이 상호 존중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조사지표가 대부분 수동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지표들이 내가 타인에 의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보장받고 있는가 혹은 얼마만큼 침해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능동적인 관점에서 조사대상이 **타인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는가** 혹은 타인의 인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도 필요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개선·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바, 이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인권을 보장 혹은 침해받고 있는나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타인의 인권을 보장 혹은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도 향후 다른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의 여지가 있다.

- 단순 실태조사의 성격을 띤 조사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다. 제시된 인권지표가 단순 실태조사의 색깔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상 자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혹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떠한지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요약하면, 포괄적인 청소년의 생활실태나 만족도 조사 항목을 대신해서 청소년이 한 인간으로서 침해받지 말아야 할 청소년 인권으로 축약이 필요하다.

2.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지표들

현재의 지표는 인권의 국제적 기준과 유엔 협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바, 토론자는 한국청소년들에게 결핍된 인권 요소로서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목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학습의 자기결정권(사교육 + 공교육)
- 부모의 부당한 대우 방어권(교사에 준해서)
-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권(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응해서)
- 진로 자기결정권(가정 + 학교)
- 수면시간 자기결정권(양적 개념뿐만 아니라 언제 자느냐도 포함되어야)
- 방과 후 시간 자기관리권
- 가정에서의 체벌, 비인권적인 언행
- 청소년의 학교선택권(부모의 선택권이 아닌)
- 청소년 여가활동 자기결정권(운동실천율과 여가문화 활동 참여도를 대신해서)
- 방과 후 여가시간 자기결정권
- 과잉학습 탈피권
- 야간자율학습 참여 선택권

- 부모와의 대화(대화의 주도 · 발언권이 부모-자녀 간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주로 어떤 주제의 대화가 오고 가는가?)
- 가족 내 소통구조(아동 · 청소년 인권의 보장은 가정 혹은 학교에서 그들의 참여를 통해 확립될 수 있을 것임->정기적 가족회의 여부, 아침 혹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가 등)
- 학교 · 가정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 가해 경험(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주로 하게 되는지?)
- 타인이 인권침해(폭력/폭언/성추행 등) 당하는 것을 외면한 적이 있는지? 외면했다면 그 이유는(불이익 당할까봐? 귀찮아서? 내가 나서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등)
- 차별경험(무엇에 의한 차별이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지?: 가정환경/성적/성별 등)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최저임금 미지급, 폭언 · 욕설 · 성추행 경험 등) 시 대처방안을 숙지하고 있는지?
- 인권을 침해 받는 대상(교사, 부모, 또래, 학원선생 등), 인권을 침해 받은 장소(공개적 공간, 폐쇄적 공간, 사이버 공간 등)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학생자치기구 발언권(실질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차라리 학생자치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의 의사가 얼마나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토 론 문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는 항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주로 OECD와의 비교 또는 다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그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연구 투자는 너무 부족했다.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높다. Kids Count(www.kidscount.org)처럼 단순하고 정확한 자료는 이후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를 통해 데이터, 연구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 투자를 늘리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1. 대영역 구분

연구진이 가장 많이 고민했을만한 사항이 대영역 구분의 문제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이전의 방식보다 인권일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6개 영역으로 새롭게 구분하는 것이 주는 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좀 더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하든지 이전의 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복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영역이 가정환경 등의 발달영역과 복지, 교육 등의 구체적 내용이 겹치면서 서로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Save the Children(2013)에서 발표한 아동의 삶의 질 지수처럼 내용영역을 중심으로 건강(health),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아동의 관계(children's relationship), 물질적 상황(material situation), 위험과 안전(risk and safety), 교육(education), 주거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바람직한 인성(flourishing)의 8개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는 인권일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기반 조성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2. 지표와 지수

Save the Children(2013)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의 지표를 8개 영역,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하나의 점수로 만들었다. 종합점수는 평균을 100점으로 잡고 상대평가를 하는 식으로 수치화해서 16개 시도별 격차를 확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도 지표는 있으나 이를 지수화하려는 노력을 추가해보길 바란다. 연구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표로 존재하는 것이 이후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 의미있지만, 정책입안자 측면에서 각 지표 측면보다는 종합적인 지수가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간결하게 단순하고 사용자 편이 고려해서 만들어야 대중이나 정책입안자에게 강력한 전달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지표들은 이전 년도와의 비교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시도별 비교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OECD 아동가족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시도별 비교는 Save the Children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절대비교 vs. 상대비교

시도간의 비교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염두에 둔다면 절대비교를 할 것인지, 상대비교를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점수를 만들어 시도하는 상대비교는 집단 내에서 각 구성원들 간의 상대적 서열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구성원들 상호간의 경쟁을 부추겨, 변화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데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된다. 상대비교에서 표시되어 나온 수치는 실제 정도라기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위치·서열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좋은 나쁜은 언제나 하위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절대비교는 다른 구성원들의 결과에 비추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목표의 달성도에 의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절대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이 되는 목적과 목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대비교보다는 절대비교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과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절대비교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절대비교에서는 목적과 목표의 달성도를 보기 때문에 성취하고 있는 부분과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쉽고, 보충 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절대비교에서 얻어진 점수결과는 그 점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점수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설정된 목적과 목표에 가깝게 도달되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낮을 때에는 목적과 목표에 그만큼 미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절대비교 방식으로 하되 이 비교규준을 어떻게 할지는 OECD평균이나 선진국 자료가 누적되어 있다면 그들이 2만 볼 때 어땠는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4. 핵심지표와 가중치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지표도 균형있게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Save the Children 삶의 질 지수는 주관적 지표가 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아동·청소년을 객체(objective)로 인식한 반면,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주체(subjective)로 바라본다. 즉, 아동·청소년이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하는가, 양부모와 같이 생활하는가와 같은 객관적 상황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인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와 같은 주관적 감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는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중심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지표를 조사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대표지표나 핵심지표를 정하는 것이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키즈카운트(Kids Count)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아동빈곤율,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비율, 저체중아 비율, 적절한 산전케어의 비율,

학교유급을 등 핵심지표로 뜨고 인구통계, 교육, 경제적 웰빙, 건강, 안전 및 위험행동 등의 카테고리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이 핵심지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수를 구성한다면 그 핵심지표에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적어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신 연구경향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빈곤, 비행, 우울, 폭력 등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둔 반면, 행복도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만족감, 행복감, 긍정적 관계 등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둔다. 즉, 아동·청소년의 삶의 부정적(negative) 측면에 대한 관심에서 긍정적(positive)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시각이 확장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긍정적인 영역(관용 정도, 이타심 정도, 공감 정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친사회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5. 지속성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정책의 지표에 관한 자료가 될 만한 연구나 실태조사를 보면, 사용한 기준과 표현 방식이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정책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지표의 경우 지속적인 정기출판이 필요하다. 일회성 자료는 영향력이 떨어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공식 자료를 구분하고 개인별 조사가 필요없는 공식자료의 경우 매년 키즈카운트(Kids Count) 웹사이트처럼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6. 구체적인 지표 내용

- 2-1. 이름과 국적(제7조), 2-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에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생되자마자 바로 등록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출생신고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제 시간(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 하는 비율, 출생신고 되지 않고 유기되거나 유기되어 사망한 비율 등이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 3-1-1-7.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들어갔는데 이것과 더불어 과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 3-5-1-1. 아동복지시설 평가 및 조사관련 지표는 매 3년마다 아동복지시설평가를 진행하므로 이에서 평가등급별 비율을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인권지표가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아니면 요보호아동의 가정 내 보호(시설이 아니라 가정위탁이나 입양) 비율 등을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는 “건강 및 복지”라고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 3-2-1-1. 가출청소년 비율은 전체 가출인수 대비 청소년 가출의 비율을 보는 것(2011년 지표)보다 전체 청소년 수 대비 가출경험 청소년 수를 보는 것(2006년 지표)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4-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는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표로는 4-5-0-1. 성교육 경험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경험률, 성병감염률이나 청소년 출산율(미혼모) 등도 함께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4-2-1-3. 영아 사망률(성별)을 별도의 지표로 넣어야 한다. 국제비교에 가장 좋은 지표 중의 하나이다.
- 4-4-2-4. 비만율은 저체중율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숙아, 저체중아 비율 등도 아동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체중아 비율도 국제비교에 가장 좋은 지표 중의 하나이다. 또한 BMI는 20세 이상에게 맞는 방법이고 체중(g)/신장(cm)x100을 사용하는 Kaup지수는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18 이상이면 비만이다. Rohler지수는 학교에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비만판정 지수로 많이 사용하며 체중(kg)/신장(cm)3x107로 신장이 110~129cm에서 180 이상이고 130~149cm에서는 170 이상, 150cm 이상에는 16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 BMI지수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 Kaup지수나 Rohler지수 등과 같이 연령대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 록】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영지 연구위원/김경준 선임연구위원 (02)2188-8846/8832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에 각각 응답하였음.

문 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_____시 _____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_____시 _____분)

문 2.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문 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야간 자율학습 | ⑤ 채팅, 문자 메시지 |
| ② 학원, 과외 | ⑥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
|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⑧ 기타() |

→ 「문 2-1」을 응답한 후 문 3으로 가세요

문 3.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②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③ 보통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④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문 3-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 ()

→ 「문 3-1」을 응답한 후 문 4로 가세요

문 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 급식(영양, 맛과 양 등)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 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문 6.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문 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 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 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 9」로 가세요
- ② 가끔 생각한다 → 「문 8-1」로 가세요
- ③ 자주 생각한다 → 「문 8-1」로 가세요

문 8-1.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성적
- ② 가족 간의 갈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기타 ()

→ 「문 8-1」을 응답한 후 문 9로 가세요

문 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 센터(예: 청소년 전화 1388)
- ⑩ 기타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3)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①	②	③	④

문 20-1. **(교육을 받아본 것에 모두 응답하세요)**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문 20. 교육을 받은 횟수	문 20-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권교육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①	②	③	④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을 받은 적 없음				
2) 다문화 이해 교육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①	②	③	④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을 받은 적 없음				
3) 청소년 근로교육(아르바이트 등)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①	②	③	④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을 받은 적 없음				

- 161 -

문 24.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문 24-1. 최근 1년 동안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학원을 다닌적 없음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⑨
	2)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5.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 26.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사이버 공간(게시판 댓글, 채팅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 27.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①	②	③	④
2)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①	②	③	④
3)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4) 문화 예술 공간 (공연장, 전시장 등)	①	②	③	④

문 27-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문 2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시설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 ③ 충분한 편이다
- ④ 매우 충분하다

문 29.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 30. 학교에 가지 않는 날(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세가지만** 골라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공부 | ⑧ 문화행사, 예술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운동 경기 등) |
| ② 독서 | ⑨ 운동 |
| ③ TV 시청 | ⑩ 휴대전화로 대화하기 |
|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⑪ 쇼핑(인터넷 쇼핑 포함) |
| ⑤ 인터넷(정보검색, 채팅, 이메일 등) | ⑫ 집에서 휴식 |
| ⑥ 친구와 놀기 | ⑬ 여행 |
| ⑦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등 취미활동 | ⑭ 기타() |

문 3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 32.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 33.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문 3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문 3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37.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 다니는 학교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학교가 아닌 경우는 ⑨ 번에 표시하세요. ⑨ 종교학교가 아님				
4)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7)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 38.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문 39.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①	②	③	④
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문 40.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41.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42.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 43.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유엔(UN)아동권리협약 :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

내 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 4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 45. 다음은 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한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 다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3)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4)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 4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48.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8-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49」로 가세요

문 48-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없다	1-2 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2년 기준 시간 당 4,580원, 2013년 기준 시간 당 4,8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 「문 48-1」을 응답한 후 문 49로 가세요

문 49.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 피해'란, 아래 내용이 포함된 모든 성 관련 피해를 의미합니다.

- 성희롱: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놀림
- 성추행: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 강제적 성관계: 폭력 등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 ① 있다 ➡ 「문 49-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50」으로 가세요

문 49-1.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어떤 피해를 경험했습니까?

- ① 성희롱 ② 성추행 ③ 강제적 성관계

문 49-2.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인터넷 ⑩ 기타()

➡ 「문 49-2」를 응답한 후 문 50으로 가세요

문 50.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문 5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 1.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_____ ⑩ 없음

배문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 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r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영지 연구위원/김경준 선임연구위원 (02)2188-8846/8832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에 각각 응답하였음.

문 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인가요?

-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_____시 _____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_____시 _____분)

문 2.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예 → 「문 2-1」로 가세요
② 아니요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학원, 과외 | ⑤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
(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 ⑦ 기타() |
| ④ 채팅, 문자 메시지 | |

문 3. 학교에 가기 전 아침밥을 먹나요?

- ①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②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④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문 3-1.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 ()

문 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 급식(영양, 맛과 양 등)에 만족하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 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①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공부하는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①	②	③	④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외모·신체 조건	①	②	③	④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 센터(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 ()

나 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다른 사람처럼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④ 매우 행복하다
- ➡ 「문 10-1」로 가세요
- ➡ 「문 11」로 가세요

문 10-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 ()

문 11.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문 12.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하나요?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문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문 13-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14」로 가세요

문 13-1.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괴롭힘을 당해서 | ⑥ 학교수업이 싫어서 |
|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 ⑦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
|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 ⑧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
|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⑨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
| 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⑩ 기타() |

문 14. **최근 1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주에 1~2번	한달에 1~2번	한학기에 1~2번	전혀 없다
지각	①	②	③	④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수업을 빼 먹음	①	②	③	④
수업시간에 잠	①	②	③	④
숙제를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문 1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학교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①	②	③	④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아동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다문화 가정 아동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아동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 가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다툼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문 22-1. **최근 1년 동안** 학원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학원을 다닌적 없음
학원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⑨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3.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 2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비밀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사이버 공간(게시판 댓글, 채팅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 29. **최근 1년 동안** 어린이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나요?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 30.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문 31.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 편이다	도와주는 편이다	잘 도와준다
가정	①	②	③	④
학교	①	②	③	④

문 32.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는 학급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을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 33.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34.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어린이를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 35.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나라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 36. 다음은 어린이에게 인권 관련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내가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①	②

문 37.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8. 다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 39.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어린이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40.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성적 피해'란, 아래 내용이 포함된 모든 성 관련 피해를 의미합니다.

- 성희롱 : 성적인 창피함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놀림
- 성추행 :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 강제적 성관계 : 폭력 등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 ① 있다 ➡ 「문 40-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41」로 가세요

문 40-1.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어떤 피해를 경험했나요?

- ① 성희롱 ② 성추행 ③ 강제적인 성관계

문 40-2.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인터넷
 ⑩ 기타()

문 4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문 42.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가정	①	②	③	④
학교	①	②	③	④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 1.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_____ ⑩ 없음

배문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 학 졸업	4년제 대 학 졸업	대 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 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숍자료집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인 쇄 2013년 6월 10일

발 행 2013년 6월 1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